

지자체의 지리적 환경과 인구 주거 구조에 따른 **상대적 입지 선택**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 수립 시 위법 사항과 협의 승인과정의 절차적 위법 사항 등을 지적 합니다.

2026. 6. 12

순천시민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순천대 박상숙교수 지정 민선 7·8기 입지의 적·위법 비교 분석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상숙 교수는 민선 7기 와 민선 8기 입지 선정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였음]

번호	위법 항목 (계월리:월등면 송치 산골) (연향1: 순천시 도심)	7기 (계월리)	8기 (연향1)	비고
1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도심 대기관리권역법[합목적 법적용]	적법	위법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5 위반
2	환경계획에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적법	위법	
3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시 행령 제2조제1항	적법	위법	반환경적 항목 반인륜적 항목
4	불리한 “지역환경지준조례” 삭제 순천시환경지본조례 제5조 제7항	적법	위법	
5	큰규모 상업지역, 주거지역(계월리:4.5km) (연향1: 250m)	적법	위법	환경영향평가 제7조1항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생물권보존 핵심.완충지역(계월리:협력구역) (연향1:핵심·완충구역)	적법	위법	환경영향평가 제7조1항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야생동물 법정 보호종(계월리: 무) (연향1:천연기념물15종. 멸종위기 15종)	적법	위법	환경영향평가 제7조1항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생태자연도(계월리: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연향1: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적법	위법	환경영향평가 제7조1항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순천만국가정원(2023년 1,000만명 관광 입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적법	위법	환경영향평가 제7조1항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교육환경보호(계월리:초등교4.5km) (연향1:초등교300m.전라남도생태문화교육원 인접)	적법	위법	환경영향평가 제7조1항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6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제12조)	적법	위법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5 위반
7	사전내정 입지선정.도심과 해룡의 심각한 오염	적법	위법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5 위반
8	생물다양성 서식지(동식물) 멸종 및 개체 감소	적법	위법	서식지 보존을 위하여 적합 장소가 넓고 많다.
9	국가하천 지방하천(해룡천의 6개 특징)	적법	위법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5 위반

※적합한 입지가 있는데도 불리한 입지를 선택한 것은 위법

※자연생태도 2등급 지역은 민간인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 주거와 떨어져있고 한적하고 숲이 우거져 쓰레기처리장으로 최적지인데 예정입지 259개소중 2등급지 172개소를 X표하고 배제기준하였다.

※“도시지역 외 지역”배제 기준은 반환경적,비윤리적인데 전체259개소중 180개소를 X표하고 제외하였다. → 사전 내정된 입지로 결정 유도하기 위한 위법, 탈법, 누락 등 수작.

순천시의 위법사항 약식 정리

순번	내 용	페이지	유형
1	<p>○순천시는 입지선정 전 선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협의하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7조 제2항 위반]</p> <p>○본안 협의를 영산강환경청과 직접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2항 절차적 위법]</p>	4-7	위법
2	<p>○연향들 폐기물 처리장설치계획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관리권역특별법에 순천시가있고 핵심이 도심이라는 사실 (순천시의 시골 인구감소가 극심하고 폐교 증가하고 황폐한 농지가 늘어났다 점) • 순천시 대기오염감축 연간집행예산이 약 250억이고 소각장 도심 설치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사실 •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의 누적적 영향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p style="text-align: center;">[대기권역특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위반]</p>	8-	위법
3	<p>○환경계획에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위반]</p>	9	위법
4	<p>○입지 배제기준표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기준은 위법 기준이라 것을 알고 사전 내정한 입지로 결정 유도하기 위한 수작을 썼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반]</p>	10	위법
5	<p>○설치계획 관계자는 전략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 위법임을 알고도 직접 영산강환경청에 협의 요청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위반]</p>	11-12	위법
6	<p>○순천시는 초안을 주관행정기관에 제출 검토하고 전남도에서 영산강환경청으로 협의 요청해야 한다는 절차를 잘 알면서도 위법하게 직접 영산강환경청에 협의 요청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2항 절차적 위법]</p>	13	위법

7	○순천시가 환경영향평가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없이 입지 고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4-17	위법
8	○환경영향평가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니 위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	위법
9	○입지가 조례에 위반되니 따로 정한다는“지역환경기준조례”는 삭제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 제7항 위반]	19	위법
10	○입지 후보지 배제기준표에서 배제항목 1개만 해당되어도 배제하였는데 연향 들1 후보지는 배제기준 적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조사하여보니 8개 항목이 배제기준에 해당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동·식물) • 순천만국가정원 • 대규모 상업지역. 주거지역 • 생물권핵심·완충지역 • 풍덕초등학교. 생태문화교육원 • 법종 보호종 • 지방하천 해룡천 • 도시 지역 외 지역 비 배제 ○‘도시지역 외지역’은 반환경적, 반인륜적. 사전 입지로 유도하기 위한 수작이며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충돌. 누적적 영향을 고려 않은 항목으로 위법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https://www.eiass.go.kr/	20-23	위법
11	○입지대안 1개소 조사 데이터 기록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 심사 분석 불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준비 안 했다.	24-26	위법
12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예비평가 수준으로도 부실 극치 기초자료 없는(10월 제출, 8/16평가) 상태. 1개지역으로 비교 불가	27	위법
13	○전남환경조례 뿐 아니라 순천시 환경조례를 바로 확인하였음에도 사전 내정 입지로 결정 위한 위법	28-29	위법
14	○사전 내정 입지를 본안 초안 공문서등 여러 개소에 걸쳐 표시하였다.	30-34	위법
15	○가장 중요한 인구 주거 통계를 한 곳도 조사하지 않았다.	35	위법
16	○추진 예정 입지로 들어서면 도심과 해룡면이 심각한 오염 수준	36-46	위법
17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 보존)을 위하여 다른 적합 입지가 넓고 많은데도 위험성을 알고도 사전 입지로 내정 하였다.	47-54	위법
18	○해룡천의 6개 특징을 알고서도 내정 입지로 정 하였다 ○국립생태원코뱅크 Ecological Information https://www.nie-ecobank.kr/cmmn/Index.do	55-56	위법
19	○순천시의 자원순환계획 위법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5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위반으로 위법	57-58	위법

1.순천시는 입지선정전 선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협의하지 않았고 절차적 위법인 본안 협의를 영산강환경청(전남도가 협의해야 하는데)과 직접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입지 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핵심사항)를 협의하여야 하나 협의 미요청 미실시 위법하고 또한 절차적 위법인 본안 협의를 영산강환경청(전남도가 협의해야 하는데)과 직접 위법하게 협의하였다.

구 분	내 용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평가의 대상)	<p>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p> <p>②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2. 개발 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p> <p>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p> <p>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p>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종류)	<p>②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p> <p>[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협의 요청 시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발 기본 계획의 종류</th> <th>협의 요청 시기</th> </tr> </thead> <tbody> <tr> <td>거.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td> <td>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td> <td>「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u>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하기 전</u></td> </tr> </tbody> </table> <p>○폐촉법 제9조 2항(협의 요청사항) ②입지선정계획 4가지 협의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및 발생량 2.폐기물 처리대상 지역 3.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와 규모 4.입지선정 기준과 방법</p> <p>제9조3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p>	구분	개발 기본 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 시기	거.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u>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하기 전</u>	
구분	개발 기본 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 시기						
거.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u>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하기 전</u>						
<p>시행령 제7조 ②항[별표2]는 폐촉법제9조3항에 따라 입지선정 전으로 본안 초안 근거가 될 수 없음</p>								

○순천시은 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승인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임에도 “승인 받지 않는 계획”으로 알면서도 승인기관(전라남도)에 제출하지 않고 영산강환경청에 직접 위법 제출하였다.

○승인행정기관(전라남도)이 협의해야 하는데 직접 협의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위법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다시 생각하자!
새로운 공간의 나라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내용 보냄[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 관련근거

- 가. 순천시 청소자원과-1292(2024. 1. 9.)호
- 나. 순천시 청소자원과-8382(2024. 3. 5.)호

2. 귀 기관에서 협의 요청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협의내용을 [붙임1]과 같이 보내드리니,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동 사업의 협의진행 현황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내용 1부.

2.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서식) 1부. 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신자 순천시청(청소자원과장), 한국환경연구원장

주무관	김수진	과장	박문구	국장	최재웅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연재	2024. 3. 27.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과-1845				접수			
우	61945	광주 서구 유촌동 영산강유역환경청 31				/	http://yeongsan.ne.go.kr	
전화번호	062-410-5253	팩스번호	062-410-5249	/	sk1kak@ne.go.kr	/	비공개(5)	

○순천시와 영산강환경청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하기 전에 협의 사항을 본안 초안 협의 근거로 알면서도 불법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이다.

○순천시는 영산강환경청에 절차적 위법이니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전남도에서 순천시에 승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이 협의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 사업 개요 〉

- 사업명: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대안1)
- 사업규모: (시설용량) 260톤/일, (부지면적) 60,000㎡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전
- 계획수립자/ 승인기관: 순천시청/ 순천시

승인기관은 전라남도인데 순천시 자체 승인이라는 법절차를 일탈한 중대 위법

□ 협의내용

1. 총괄

- 동 계획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광역폐기물소각 시설 입지선정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임
- 동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서포함)에 제시된 저감 방안 등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승인기관에서는 상위·관련 계획 반영여부, 개별법 등에서 정하는 인·허가 사항 및 관계기관(부서)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동 사업계획 시행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탄소흡수를 늘리는 친환경적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방안을 별도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은 향후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임

입지선정하기 전 협의해야할 사항을 최종 본안협의 사항 근거로 협의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

※법령상 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2항 환경청장-승인기관장 (전남도 승인)

폐촉법제9조2항 입지선정전에 입지선정계획4개항을 협의하라는것입니다.

-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2.폐기물의 처리대상지역
- 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 4.입지선정기준과 방법.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은 모두 승인이 필요한 설치계획이고 승인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설치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산강환경청에 직접 제출(전라남도 승인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하였으니 절차상 위법

순천하세요!



순 천 시



수신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경유)

제목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20부(별송) 끝.

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는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계획으로 위법합니다.

[협의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2항 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순 천 시 장

주무관	박승진 대결 2024. 1.	광역자원화시 심담장	추승안	청소자원과장 조철수	생태환경센터 소장	최영화
부시장	9. 유현호					
참조자						
시행	청소자원과-1292			접수		
주	57956	전라남도 순천시 미수로 13. (장천동, 청소자원과) (장천동)				http://www.suncheon.go.kr
전화번호	061-749-6423	팩스번호	061-749-4638	/ qwerty3690@korea.kr		/ 대한민국 공개

2. 순천시는 연향들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추진하였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위반]

제2조1항“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한 지역 [별표1]

○ 전라남도(총22개 지자체 중, 6개지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순천시 지역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도심의 공기오염이 심하여 "대기관리권역법" 에, 대통령령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 원칙)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도심 핵심지역이 없다면 인접 구례군, 곡성군, 화순군, 보성군과 같이 "대기오염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

지자체의 지리적 환경과 인구 주거 구조에 따른 상대적 입지 선택

순천시는 서울특별시 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은 지자체로 도시가 약 20% 시골이 약 80%로 초중등학교가 폐교되는 곳이 많고 농사 짓지 않아 농지가 황폐하여 가는 곳이 점점 급격히 늘어 가는 추세로 인구 소멸되어 쓰레기 처리장 설치하기 적합한 지역이 넓고 많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적용 위반]

순천시는 2025년 대기오염 감축을 위하여 24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 도심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강구하면서 폐기물 소각장을 도심에 설치, 대기오염을 폭증시키는 이율배반적 정책은 위법입니다.

[합목적 법적용 위반]

[순천시 2025년 대기오염감축 집행예산 약249억원 정보공개청구결과]

순천시는 정부에서 지정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심에 저감 정책이 철저히 요구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반대로 폭증 정책이며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위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법 제4조 제5항 위반]

3.대기오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정책은 위법(도심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위법)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 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순천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지역" 약20%, 도심 외 지역 약80%로 도심이며 국가 정원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확실하게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정책 계획으로 위법하다.

●지역적 특성(입지 선정 고시 지역. 연향동 814-25 일원)	
○대기관리특별법지역의 핵심지역	○전남도환경 관리 특별지역
○법정보호종.천연기념종 15종 멸종위기 I·II종 17종	○교육환경보호. 생태교육원인접. 풍덕초등300m
○생물보존권 핵심·완충지역	○자연생태도 (동·식물보호)
○큰규모 주거지역 250m	○큰규모 상업지역 250m
○순천만국가정원: 2023년 1,000만명 관광객 유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 관한법률)	
○지정입지로부터 반경 5km인내 순천시도심 95%	
○지정입지로부터 반경 5km이내 해룡면 인구거주지역 80% (해룡면 인구 55천명 > 곡성군 인구 27천명+ 구례군 인구 24천명)	

순천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을 다 알면서도 위법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 제1항 위반

4.순천시는 폐기물처리장“입지선정 배제기준표”에서“도시지역 외 지역배제”는 반환경적, 반인륜적 위법계획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입지로 결정하기 위한 수작을 썼다.

배제 기준	순천시의 배제 사유	오류 내용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체육 문화시설 설치에 주민 접근성을 좋게하기 위함.	○체육시설은 피해주민 보상차원 ○연향뜰에서 도보 10분 자전거 3분 거리에 전남 최대 규모 체육 시설 보유.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역행(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없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정면 배치된 반인륜적 항목.

○도시는 시골에 비해 많은 인구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자동차 등이 많아 대기의 오염이 심각하여 순천시에서는 2025년도 대기 공해도 감축 예산 약 249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많은 대기공해물질 배출 폐기물 소각장을 도심에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 무지 와 인간 멸시 정책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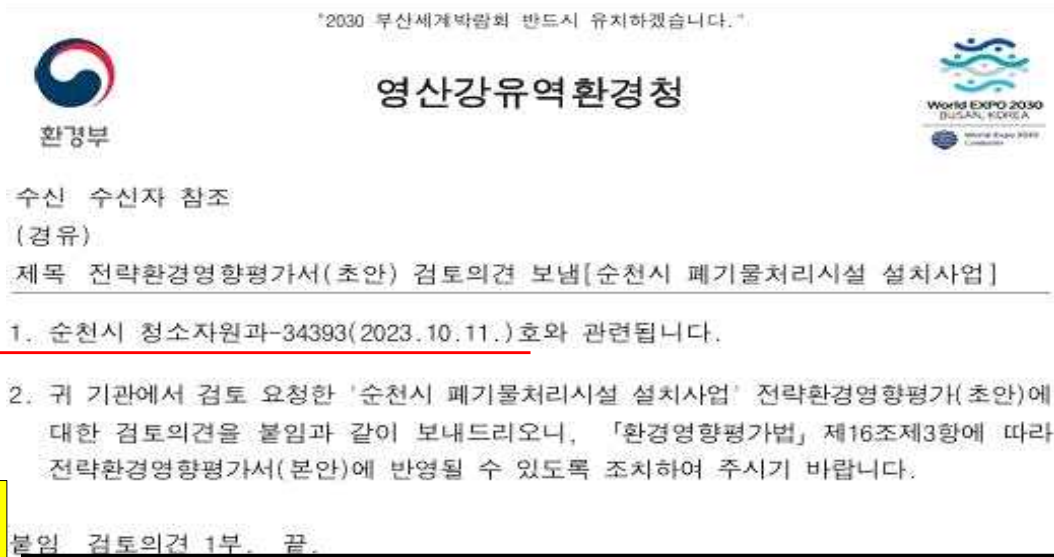
○주민의 생존권과 주거 환경을 무시한 독단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비현실적인 발상이고 사전 내정된 입지로 유도하려는 수작이다.

○입지후보지 전체 259개소 중에서 180개 지역을 X표를 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기준으로 한 것은 반환경적, 비인간적, 인간멸시항목으로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인식 부족, 인간과 다른 평가 항목(동물 식물 산림 등등)과 가치가 전도된 것으로 言語道斷이며 학습적 판단 능력 부재이다.

○도시지역에 대기 정체 현상이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하며, 그 피해 또한 크고 집중되는데 시골 배제하고 도시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계획으로 못 알아차렸다면 정신이상자 알았다면 공범이다.

순천시는 입지 배제기준표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기준은 잘 못된 배제기준이라 것을 입지선정위원장이 지적하였으나 사전 내정된 입지로 결정 유도하기 위한 수작을 버리지 못하고 자진 위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5.순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주관행정기관에 접수하고 전남도에서 영산강환경청에 협의 요청하여야 하나 직접 영산강환경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 절차적 위법이다.



순천시의 영산강환경청에 직접 초안 협의 요청한 공문은 위법.
[정당한 협의 근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영산강환경청은 순천시에서 전략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 위법을 알면서도 직접 보내어 협의 요청[청소자원과-34393(2023.10.11.)]하였다.



설치 입지 1개지
역을 지정하여 협
의하여 준 것은
사전입지 결정보
로 위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사업 개요 〉

- 사업명: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치: 전남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
- 사업면적(소각용량) : 60,000㎡(260톤/일)
 - ※ 추가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45톤/일), 열분해 유화시설(7톤/일)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전
- 사업시행자(승인가관): 순천시장(순천시)

입지선정하기 전
협의 해야할 사항
을 초안 협의 근
거로 할 것은 중
대하고 명확한 절
차상 위법

※법령상 협의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지방환경청장↔주관행정기관장

□ 검토의견

1. 총괄

- 동 계획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기본계획임
 - 동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계획부지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지역(순천만)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지 주변에는 해룡천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및 습지보호지역이 위치하고 있음
 - 공사·운영 시 이와 관련된 조류(겨울철새 등)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존 및 생태적 기능성 측면에서의 입지적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제시하여야 함

6.순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전남도)에 제출하고 전남도는 검토후 영산강환경청에 협의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협의 요청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②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권한 업무의 위임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중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 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의 2(시, 군, 구의 환경계획의 승인)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 군, 구의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 군, 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순천시는 초안 협의를 주관행정기관에 제출 검토하고 전남도에서 영산강환경청으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여야 하나 법규를 잘 알면서도 위법 제출 절차를 수행하였으니 절차상 위법

7.순천시는 환경영향평가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심의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으로 고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을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어 용역으로 기초 데이터를 조사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 평가위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비교 심사 분석을 통하여 최종 입지 선정 등 결정을 위해서인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법한 방법이라는 하나 협의하여 본안이 도착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회의를 소집 심의 하여야 하는데 2024.3.27. 도착하자마자 심의하지 않고 2024.3.29.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자체 위법 승인하고 2024.4.2. 입지 고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는 특정 지역 개발이 아니므로 3개소 이상의 예정지 기초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해야 하는데

○최종입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없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지 고시하였다.

○아래 문서는 1심재판 피고측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를 복사하여 붙인 것입니다.

- 2024구합1266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외 소
 - 원고:황규홍 외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외 2)
 - 피고:순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지평 담당변호사 강민제외 2)
2024. 3. 29 입지선정위원회: 이 사건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
2024. 4. 2 이 사건 처분: 입지 결정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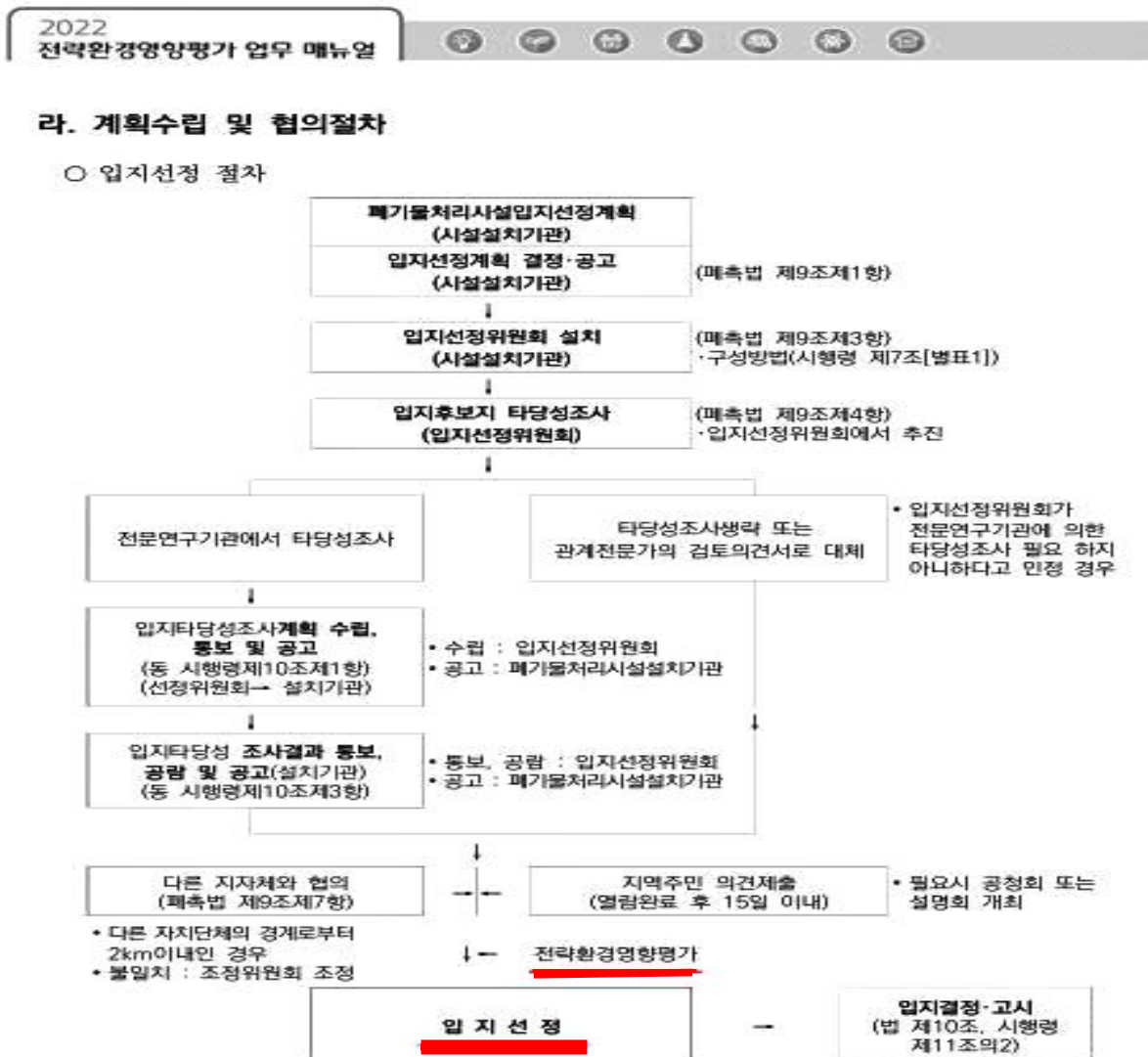
합리적으로 결정한 배타적 입지 3개소 이상의 각 입지를 기점으로 한 기초자료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적이 없이 본안 협의 그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지결정 고시함으로써 위법합니다.

2023.10.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 작성 및 제출 (순천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갑4
2023.10.1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갑15
2023.10.2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해룡면)	
2023.10.27.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연향동)	
2023.11.15.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냄(영산강유역환경청→순천시)	
2023. 11.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	
2023. 11.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검토, 승인 요청(전라남도 → 환경부)	
2023.12.5.	주민감사청구	
2023. 12. 7.	공청회	
2023.12.26.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고발장 제출 위법사유: ① 순천에코드림(민간제안서) 특혜, ② 주민설명회 위법(자유로운 의사 방해), ③ 문화체육시설 설치목적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2024.1.9.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	
2024. 3.11.	전라남도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승인(환경부)	
2024. 3.12.	전라남도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시·군 배포	갑16
2024. 3. 29.	입지선정위원회: 이 사건 부지로, 이 사건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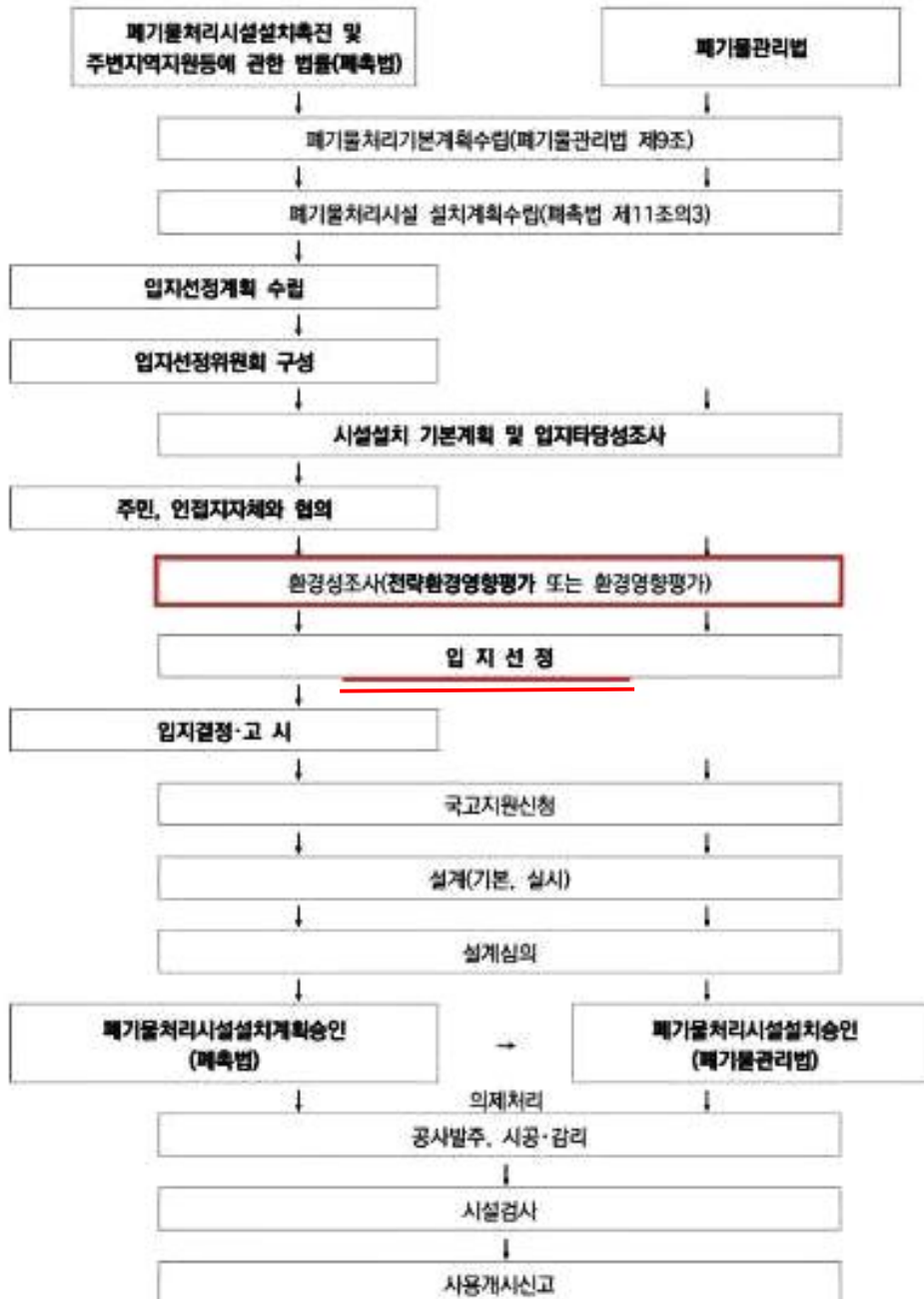
2024. 4. 2.	이 사건 처분: 2024. 4.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를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결정·고시처분	
-------------	--	--

※ 최종입지 결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 업무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배타적 변별력있는 3개소 이상 각각 입지 기점으로 작성된 모든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 집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통한 비교분석 결과를 최종 입지로 결정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



8. 순천시는 환경영향평가위원이 입지 확정 고시 직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구 분		소 속	성 명	분 야	비 고
1	위원장	순천시 ****과	조**	계획수립기관공무원	
2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문**	협의기관공무원	
3	위원	순천시 ***과	이**	계획수립기관공무원	
4	위원	전남대학교(여)*****과	윤**	민간전문가	
5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실	안**	협의기관추천 민간전문가	
6	위원	(주)한국*****연구소 대표	임**	순천시장추천 민간전문가	
7	위원	덕연동 ****	조**	계획지역거주 주민	
8	위원	순천대학교****과	안**	시민단체추천 민간전문가	
9	위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이**	건강영향평가전문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9. 순천시는 "순천시지역환경기준조례"를 삭제하고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을 추진하였다.

순천시는 대기오염도가 심한 도심의 특별관리 기준이 되는 "지역 환경 기준 조례"를 시민의 눈과 귀 입을 막으려고 삭제하고 폐기물소각처리장을 도심에 설치하려고 불법 부당하게 절차를 어겨가며 추진하였다.

순천시환경기본조례[시행 2022.09.15]

제5조 제2항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

제7항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2022.09.15 조례 제2448호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57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문화 창진을 위하여 시·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어념) 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먼저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
2.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4.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자원조달방법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매월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입지가 조례에 위반되니 따로 정한다는 "지역환경조례"는 삭제되고 없다. 사전 예정된 입지로 결정 유도하기 위한 위법

10.입지 후보지 배제 기준 적용 오류

(연향들1 배제 기준 적용)

배제 기준표에서 1개만 X되어도 배제되는데 연향들1 후보지는 배제기준 적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조사하여보니 8개 항목이 배제기준에 해당된다. 사전 내정 입지로 결정하기 위한 누락 수작

제3장 부록

<표 3.1.1-3> 계속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시행령 제2조1항[별표1] 평가항목에 정면 배치 [국가 지방하천 추가]

O: 비배제

X: 배제

고의누락.추가

그룹	연번	명칭	위치	입지 배제기준															국가 지방하천
				도시지역 외 지역	용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국립 및 도립공원)	역사·환경보존지역	산림보호구역	야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요관광지	군사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철도보호지구	
	26	연향들1	연향동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E		<u>착오 지적</u>		↓	↓	↓				↓	↓			↓					↓
		<u>지적적용결과</u>		X	X	X	O	O	O	X	X	O	O	X	O	O	O	O	X

•환경이란 사람이 우선이고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부족. 인간멸시
 •환경평가 목적 가치 상실
 •도시지역 설치는 인간과 다른 입지기준 항목 (동물,산림,생태)과 가치전도,
 •반인륜적 범죄 계획

큰규모 상업지역 : 250m
 큰규모 주거지역 : 250m

풍덕초등학교 300m
 풍덕중학교 1000m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바로 인접

순천만국가정원
 2023년1,000만명 관광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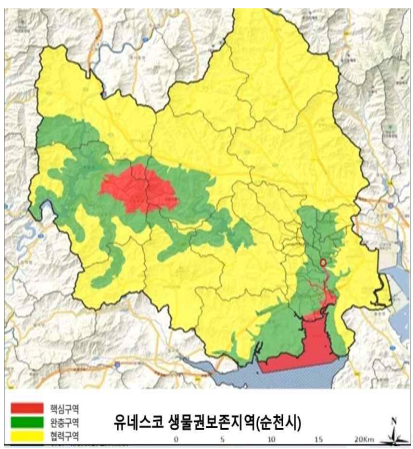
생태자연도(동.식물)

대기 공해 핵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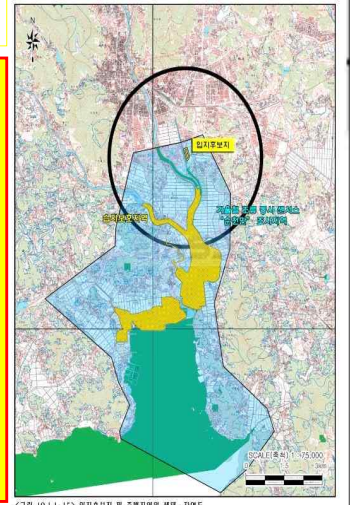
생물권보존핵심·완충지역.

법정보호종.

※순천시도심 공해취약
 ○대기관리특별권역법 제2조1항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별표1]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 제12조 특별관리하고있는 지역[별표2]



전략환경평가 메뉴얼456page
 •천연기념물 : 15종
 •멸종위기종 : 17종
 (본 자료 50page)



순천룡천남지방하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해룡천은 겨울철 조류센서스 지역

입지후보지 259개소 중 생태자연도 2등급(민간인도 건축할 수 있는)지역 172개소를 X표시하고 배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인 해룡천은 제외하였다.사전 내정입지로 결정하기 위한 수작.(초안협의 문서)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기본원칙 위반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총돌원인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기준 이반 환경적
 이치에 맞지 않는 항목이므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

나. 입지타당성 배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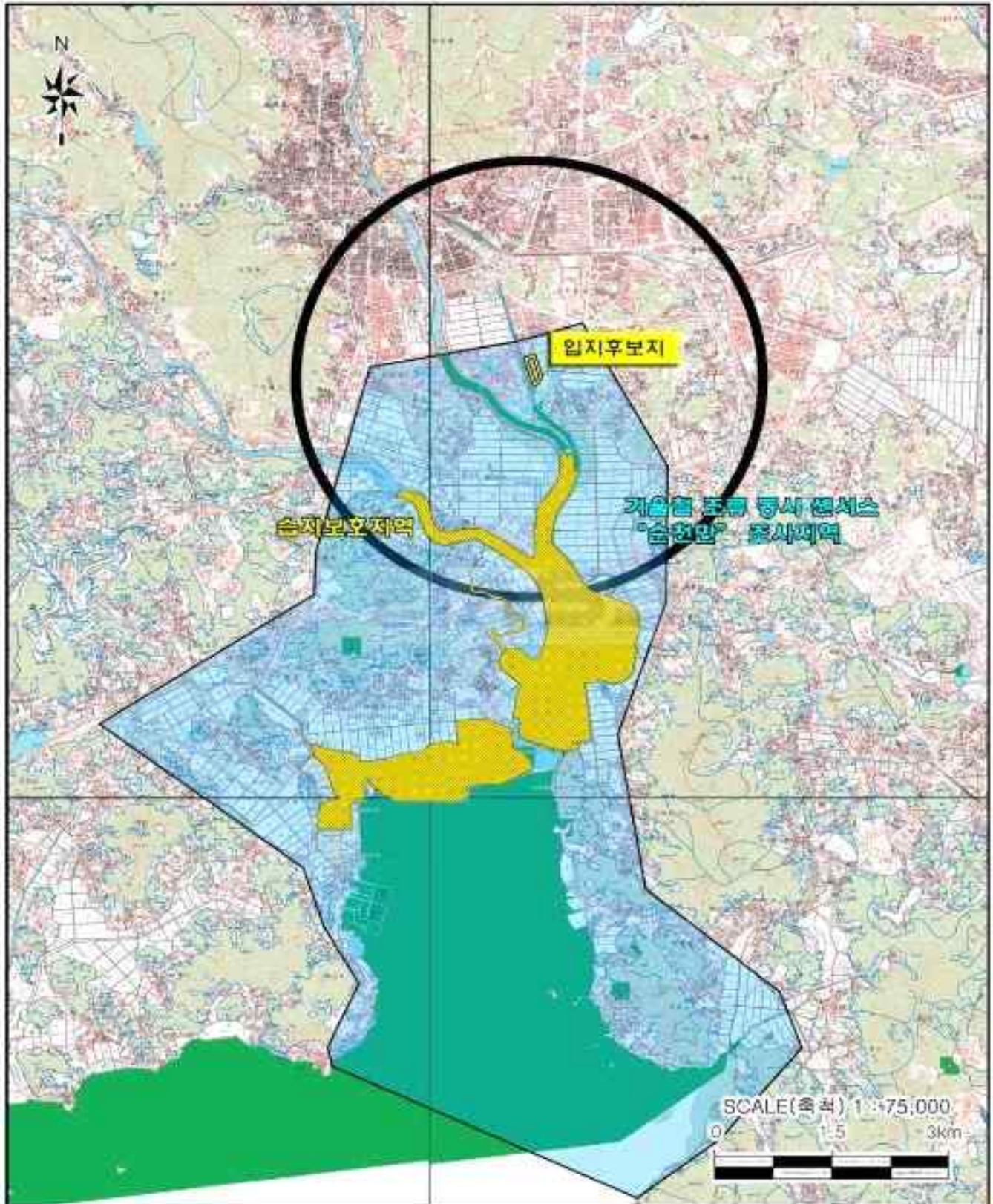
<표 3.1.1-1> 입지후보지 배제기준

○총돌: 도시지역은 안된다(주거지역 상업지역) ↔ 도시 지역으로 해야한다(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 <https://www.eia.go.kr/>

	배제 기준	내 용
용도 지역	1) 도시지역 외 지역	주민편익시설 및 용복합 체육문화시설을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불가 용도지역 배제
생태 보전	1) 생태·경관보전지역	건축물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불가
	2) 자연공원 (국립 및 도립공원)	공원구역 내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시 공원관리청의 허가 필요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자연공원(국립 및 도립공원) 배제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재보존지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 범위 내 건설공사시 문화재에 대한 영향여부검토필요 문화재 보호 및 추가적인 행정절차로인한 사업진행 지연을 방지하고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입지후보지 배제
	4) 산림보호구역	절토/성토/정지 및 토석 굴취등의 토지형질 변경불가
	5) 야생생물보호구역	건축물 신축/증축(기존 연면적 2배 이상) 및 토지의 형질변경 불가
	6) 생태자연도	자연환경 및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 보전 등을 위해 분류된 "1등급, 2등급 권역"의 입지후보지배제
	7) 습지보호지역	건축물 신축/증축(기존 연면적 2배 이상) 및 토지의 형질변경 불가
수질 보전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취수시설의 상류·하류일정지역 공장설립 불가
기 타	1) 주요관광지	관광지 이용객의 만족도 저감방지를위하여 "주요관광지"의 입지후보지배제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 불가(단,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연면적 200m ² 건축물 가능)
	3) 교육환경 보호구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불가(단, 의료법에 따른 멸균분쇄시설 가능)
	4)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 불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 행위, 농업인 소득 및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건축물 등의 설치 외 행위 불가
	5)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시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필요 철도시설물 안전 및 행정절차 단축을 위하여 "철도보호지구"의 입지후보지 배제
	6) 인접지자체 이격거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검토시인접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일 때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필요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접지자체이격거리"의 입지후보지배제
추가	수환경의 보전	국가 하천, 지방 하천의 수질 보전

배제기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평가항목의 기본 항목인데 추가한 "도시지역 외 지역 배제기준"은 동일한 배제기준표의 주거·상업지역과 상충배반되고 환경영향평가의 가치와 목적이 상실된 항목으로 사전 입지예정지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수작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수환경의 보전(누락은 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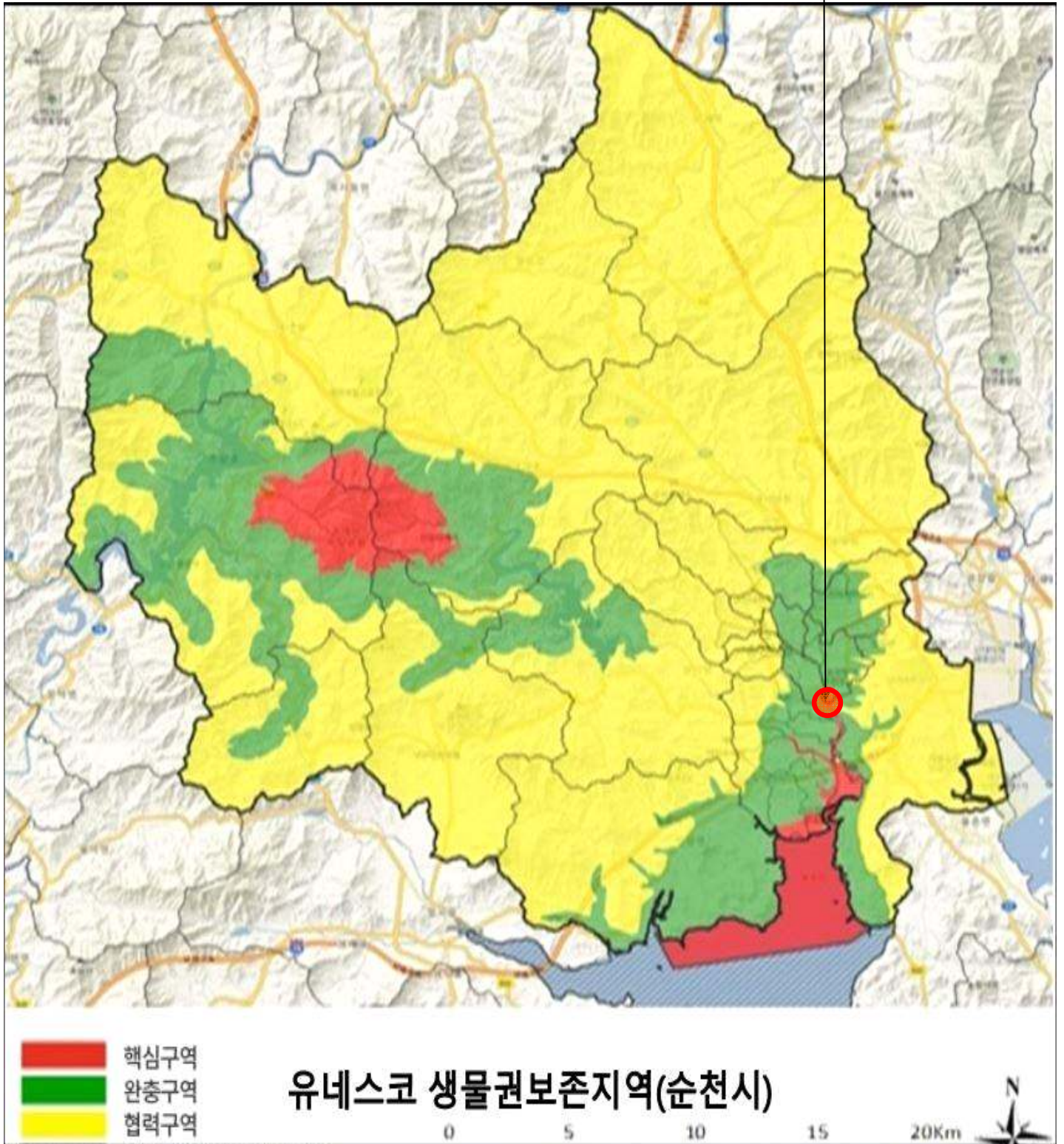


<그림 10.1.1-15>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생태·자연도

※ 입지후보지 주변지역 생태·자연도

※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생물권보존 핵심·완충지역]



11.순천시는 입지대안 1개소 조사 데이터 기록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 심사 분석 불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획을 추진하였다.

○입지선정 대안으로 폐기물 소각장은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지 3개이상의 배타적 차별화된 지역을 선정하고 이 배타적 각각 입지 3개 지역으로 부터 모든 각종 조사 데이터 내용(보호지역, 거리, 인구, 각종 수치 등등)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본안에 1개지역(연향1)만 선정하여 한곳만 입지 후보지로 조사 내용 데이터만 기록되었다. (인구 경우는 순천시 전체 인구수만 있어 더욱 비교분석 불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 심사 요원이 3개 이상의 배타적 지역의 조사 데이터 내용을 기초 자료로 각 항목을 비교 분석 최적지를 가려야 하는데 1개지역 조사 데이터로는 심사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는 커다란 오류로 전면 무효입니다.

첨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매뉴얼:

(배타적 차별화된 입지 3곳 이상 설정 대안 필수)

※ 본안의 평가서(각종 조사 데이터 자료 항목):

입지후보지 1개 지역만 조사데이터 확보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사 불가

※ 전략환경영양평가 작성 매뉴얼:

2022

전략환경영양평가 업무 매뉴얼



제4편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과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기존시설 유지, 신설, 증설 등의 사업 유형 대안을 설정
 - 해당 지역의 폐기물 발생 규모 예측과 권역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권역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규모 축소(연계처리)와 원안 유지 등의 대안을 설정하고 규모 축소를 할 경우 소각비율과 매립비율, 재활용비율 등의 대안을 설정
- ※ 종합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함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법규, 권역별 폐기물처리 최적화 계획, 사회적 수용성, 환경민감지역 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
 - 선정된 입지 대안에 대해 환경민감지역, 지구계의 정형성, 용도지역 및 지구 경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 경계에 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

(배타적 차별화된 입지 3곳 이상 설정 대안 필수)

※ 본안의 평가서(각종 조사 데이터 자료 항목):

아래 평가서 각 항목에 입지 후보지 1개 지역만 조사 데이터가 있어 (배터적입지 3개이상의 자료필요)전략환경영향평가 심사 비교분석 불가

본안의 평가서(각종 조사 데이터)에 입지후보지 1개소 데이터만 보유

■ 본안

평가서

- (본안) 0000 표지 및 목차.pdf
- (본안) 0100 1장 요약문.pdf
- (본안) 0200 개발기본계획의개요.pdf
- (본안) 0300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df
- (본안) 0400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pdf
- (본안) 0500 지역개발.pdf
- (본안) 0600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내용.pdf
- (본안) 0700 평가항목의 결정내용.pdf
- (본안) 080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pdf
- (본안) 0900 주민 및 관계기관등의 의견수렴 내용.pdf
- (본안) 1011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pdf
- (본안) 101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df
- (본안) 101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df
- (본안) 1014 수환경의 보전.pdf
- (본안) 1021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부합성-가. 대기질.pdf
- (본안) 1021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부합성-나. 악취.pdf
- (본안) 1021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부합성-다. 위생공중보건.pdf
- (본안) 1021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부합성-라. 온실가스.pdf
- (본안) 1021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부합성-마. 소음진동.pdf
- (본안) 1021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부합성-바. 토양.pdf
- (본안) 10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df
- (본안) 1023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pdf
- (본안) 103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df
- (본안) 1032 인구, 주거.pdf
- (본안) 1033 산업.pdf
- (본안) 1100 종합평가및결론.pdf
- (본안) 1200 부록(1).pdf
- (본안) 1200 부록(2).pdf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위법(예비 평가 심의 부실 극치)

○일시 : 2023.7.18 ~ 8.16

○대상 입지: 3개 이상의 배타적 차별화된 입지 없이 1개 입지(연향 814-25) 로 비교 분석심사 불가능 예비평가

○평가위원:9명(배타적 각각 입지 기점으로 부터 환경영향 기초자료 없이 심사)

○결과: 입지에 대한 필수 기초 자료(배타적 입지에 대한) 없어 문제점 제기

○순천시의 용역회사 기초 자료는 10월까지 제출하였는데 평가는 8/16 종료

평가 위원	입지(연향814-25)결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	해결여부
영상강유역환경청 문○○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	인구주거범위 미설정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대기질, 악취 항목에 대한 평가범위를 5km 정도로 설정.	배타적 대안 입지 없음
전남대환경시스템공학교수 윤○○	○본 입지는 도심 내 위치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생활환경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추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비 고려
한국환경연구원 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선정 입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각 입지 후보지 별 대기질, 악취, 동식물, 수질, 지형, 지질 경관 등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입지를 선택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교 분석 방안 및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배타적입지에 대한자료없어 비교분석불가.
전남대학교보건환경연구원 이○○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결과 연향814-25를 채택한 구체적인 사유 근거 제시	담당자 환경 무능으로제시 못함
전남대학교(여)***** **과 윤○○	-	
순천대학교****과 안○○	-	
덕연동 **** 조○○	-	
위원장 순천시 ****과 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3.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시행 2021.12.23] 위반

○순천시 도시지역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환경오염이 심하게 우려되어 광양시 일부, 여수시 일부, 순천시 일부를 광양만권으로 묶어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

○순천시 도심이 광양만권으로 포함되어있는데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 소각장 도심 설치계획은 조례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입지 결정 고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5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2조 (지역 환경기준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② 제1항에 따른 광양만권의 대기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 적용을 받는 광양만권이란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정보시스템

○광역·기초 전 자치단체의 조례 등 전 분야 정보 검색 확인을 아주 쉽게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순천시는 순천시 조례 뿐 아니라 전라남도 환경조례도 바로 확인 가능한데도 사전 내정 입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별표 1] 전라남도 환경기본조례

광양만권 대기환경기준(제12조 관련)

항 목	기준	측 정 방 법
이황산가스 (SO ₂)	연간 평균치 0.015 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자외선형광측정법 (Pulsed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7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0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 ₂)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08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40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80 μ g/m ³ 이하	베타선흡수법 (β -Ray Absorption Method)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μ g/m ³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오 존 (O ₃)	8시간 평균치 0.048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08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 평균치 0.3 μ g/m ³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3 μ g/m ³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는(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별표 2] (신설 2015.4.8)

광양만권 지정범위(제3조 관련)

대상지역	지 정 범 위	비 고
전라남도	광양시(봉강면·옥룡면·진상면·다압면 제외)	
	순천시(송주읍·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별량면·상사면·황전면·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화양면·남면·화정면·삼산면 제외)	

14. 폐기물 처리장 입지는 특정 지역 개발이 아니므로 다수의 지역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는 데 연향동 814-25번지를 사전에 내정하고 들어내고 모든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계획을 마추어 절차가 위법함을 알면서 계획을 추진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사전 지정했다는 입지 표시 개소(최종결정 2024.4.2)
가.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유일하게 1개지역 표시
[여러 개소에 걸쳐 표시]
나.초안 과 초안의 영산강환경청과의 협의 내용에 표시
다.본안 과 본안의 영산강환경청과의 협의 내용에 표시
라.전략환경영향 예비심사에 유일하게 1개지역 표시
[예비심사(2023.7.18 ~ 8.16)]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4.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2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4.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사업 특성, 입지여건,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별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제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예측하고자 설정함.

4.2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의 특징 및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황조사 범위와 예측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함.
- 따라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주요 평가항목별 영향요인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분 설정함.

4.2.1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
- 면적 : 60,000㎡
- 시설용지 6,000㎡, 조경녹지 18,000㎡, 주차장 도로 및 기타 36,000㎡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3년, 목표연도 2030년

4.2.2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설정

-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중 중점평가지역은 사업지구로 설정하여 검토하였으며, 광역평가지역은 순천시 연향동 주변 정온시설 등으로 설정하여 검토함.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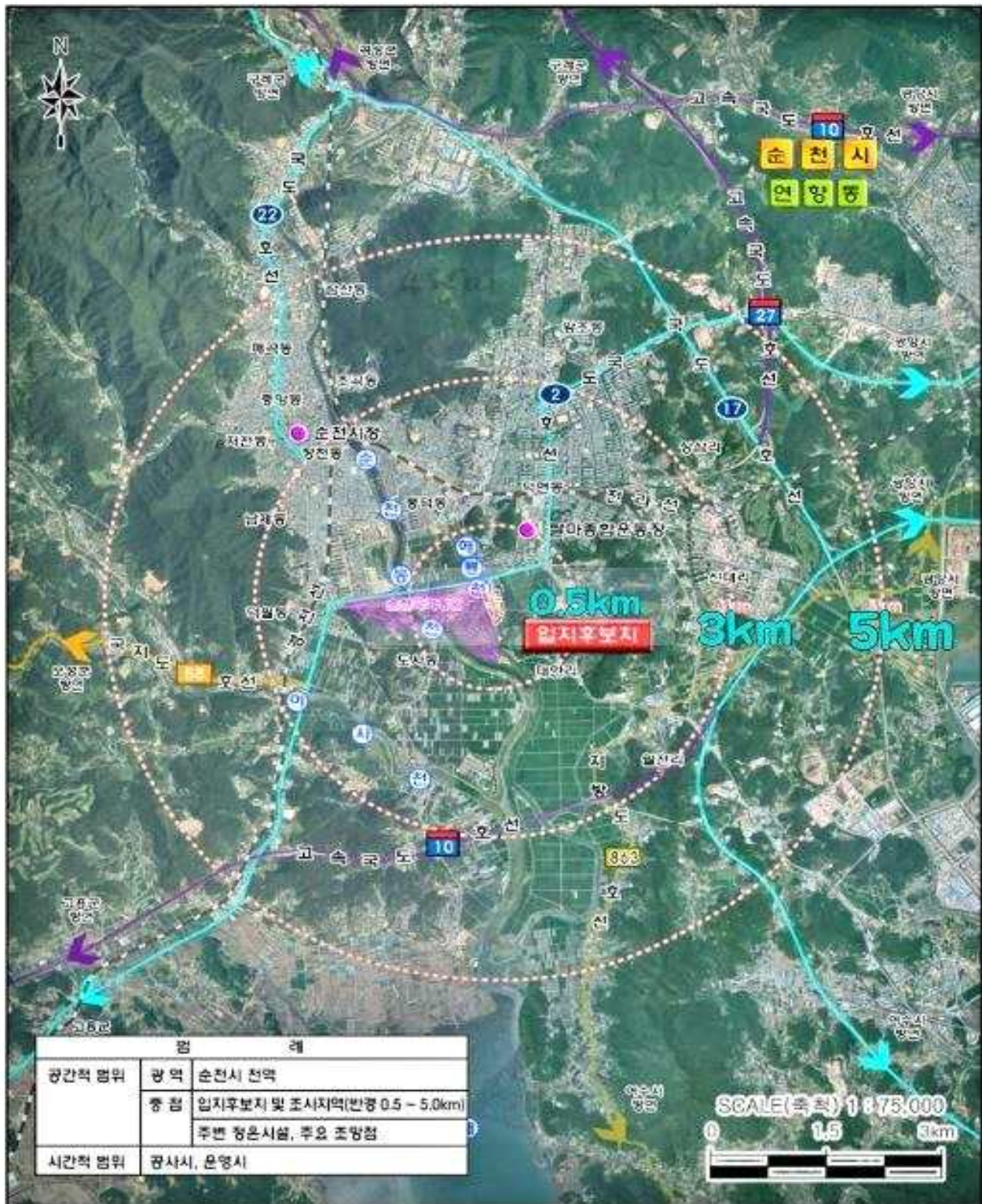
<표 4.2-1> 주요 항목별 검토대상범위

검토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 지역	설정사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입지후보지 및 후보지 경계로부터 중점조사 500m, 조류조사 3km이내	· 계획시행시 식생변화 및 육상·육수동물 서식환경 변화 예상지역
		자연환경자산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시형·시질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지형변화 예상지역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대상지가 조망되는 지점	· 계획시행시 건축물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 입지후보지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입지후보지 경계로부터 5.0 km 이내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
		악취	· 입지후보지 경계로부터 5.0 km 이내	· 악취 물질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
		온실가스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예상지역
		위생·공중 보건	· 입지후보지 경계로부터 5.0 km 이내	· 환경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주변 피해발생 예상지역
		소음·진동	· 입지후보지 경계로부터 1.0km 이내	· 공사 및 운영시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
		토양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발생 · 폐기물 등에 의한 토양오염예상 지역

<표 4.2-1> 계속

검토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 지역	설정사유
생활환경의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예상지역
	사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의한 영향예상지역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지역
	인구	주거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변화 예상
	산업	업	·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산업 변화 예상

EIAS



<그림 4.2-1> 대상지역 설정도

15. 순천시는 인구·주거 통계를 한 곳도 조사하지 않아 입지 선정 전면무효이고 환경영향평가 비교 분석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법하게 추진하였다.

- 가장 중요한 인구·주거에 있어 입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 대한 배타적 입지 각각 예정지별 인구 분포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확인하고 계획 시행으로 인한 인구 변화를 예상하여야 하는데 전혀 조사하지 않아 입지선정무효, 전략환경영향평가 불가.
- 폐기물 소각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영향력이 입지 예정지로부터 5km이므로 인구 분포 조사도 구분하여 조사 기록해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변별력 있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배타적 입지 예정지별 인구 분포

구분 배타적 입지별	입지 예정지 부터 거리	인 구			주 거	비 고
		상 주	이 동	계		
A 입지 (연향동 814-25)	1km 이내					
	3km 이내					
	5km 이내					
B 입지	1km 이내					
	3km 이내					
	5km 이내					
C 입지	1km 이내					
	3km 이내					
	5km 이내					

16. 순천시 추진 입지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순천도심과 해룡면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누적적 영향이 범외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추진하였다.

(적합입지는 순천에 넓고도 많다. 지자체별 상대적 입지 선택)

1. 배타적 입지 차별화된 3곳 이상의 대안 입지에 대한 측정 기록이 없어 비교 분석 불가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2. 입지 후보지 1개소(연향 1. 연향동 814-25)를 기점으로 한 조사 분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 왔다.

○순천 도심의 95% + 20개 마을, 해룡면 인구 거주지의 80% + 17개 마을 주민과 학교를 비롯한 주요시설 근무자가 폐기물 소각 매연으로부터 공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지 후보지로 부터 5km이내(폐기물 소각 공해물질의 영향권)

구 분	시 설 명		비 고
주거지역	1-49	순천시 도심의 95% +20개 마을 해룡면 인구주거지역의 80% +17개 마을	
교육시설	50-96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9개교	
		대학 3개교 (청암대학, 제일 대학, 폴리텍대학)	
의료시설	97-102	성가롤로종합병원, 한국종합병원, 중앙병원, 순천제일병원, 순천종합의료원, 근로복지 순천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103-111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홈	
아동복지시설	112	순천 성신원	
기타시설	113-114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어린이 동물원	

소각장 배출 물질

다이옥신
 먼지
 크롬
 카드뮴
 니켈
 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부타디엔
 디클로로프로판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나프탈렌
 크리센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릴로나이트릴
 에틸벤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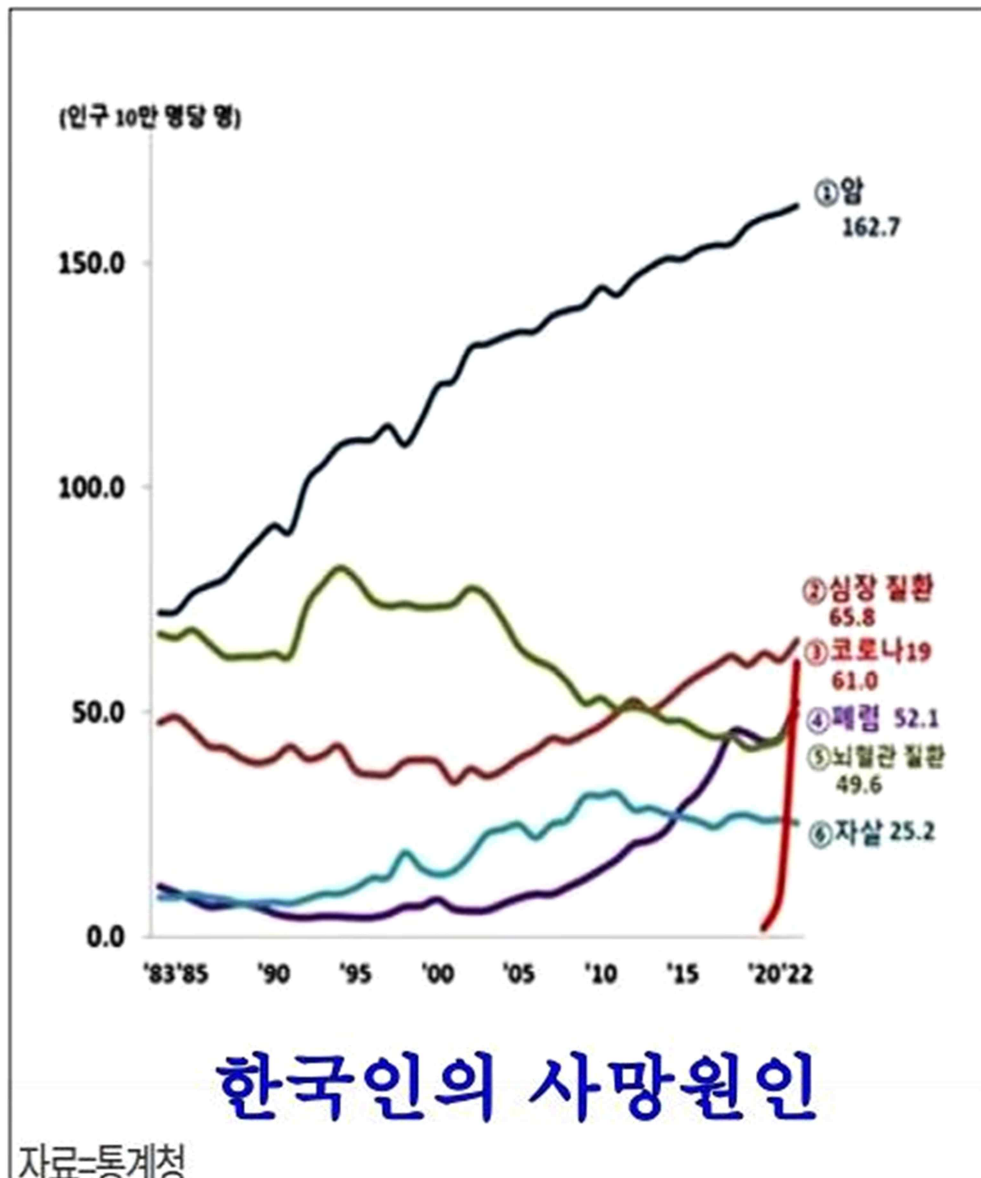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테인
 클로로폼
 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프로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국제 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 12종

국제 암연구소 지정
2급 발암물질 14종

그 외 대기오염물질 40종

(KBS 생노병사의 비밀, 쌓이면 독이 된다. 소각장 배출 물질 환경성 질환)



○"입지 선정은 해당 지자체의 지리적 환경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상대적 선택'이어야 한다. 녹지 공간과 대안 부지가 존재하는 순천시, 서울·하남 등 과밀 도시의 교육지책을 예시로 들며 주거지 인근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순천시는 타 도시와의 단순 비교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순천만의 최적지를 찾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

○순천시 용역으로 전문회사 제출 리포트에 대기질 추정 공해물질 9종(PM-10, PM-2.5, SO₂, NO₂, CO, O₃, Pb, 벤젠, 다이옥신)이 폐기물 소각시 매연 대기 공해물질 확산 면적 등농도 곡선이 순천시 도심 대부분 주요 주거지를 덮고 있다. (기준치 이하도 장기간 쌓이면 독이 된다)

하루 이틀, 한달 두달, 1년 2년.....10여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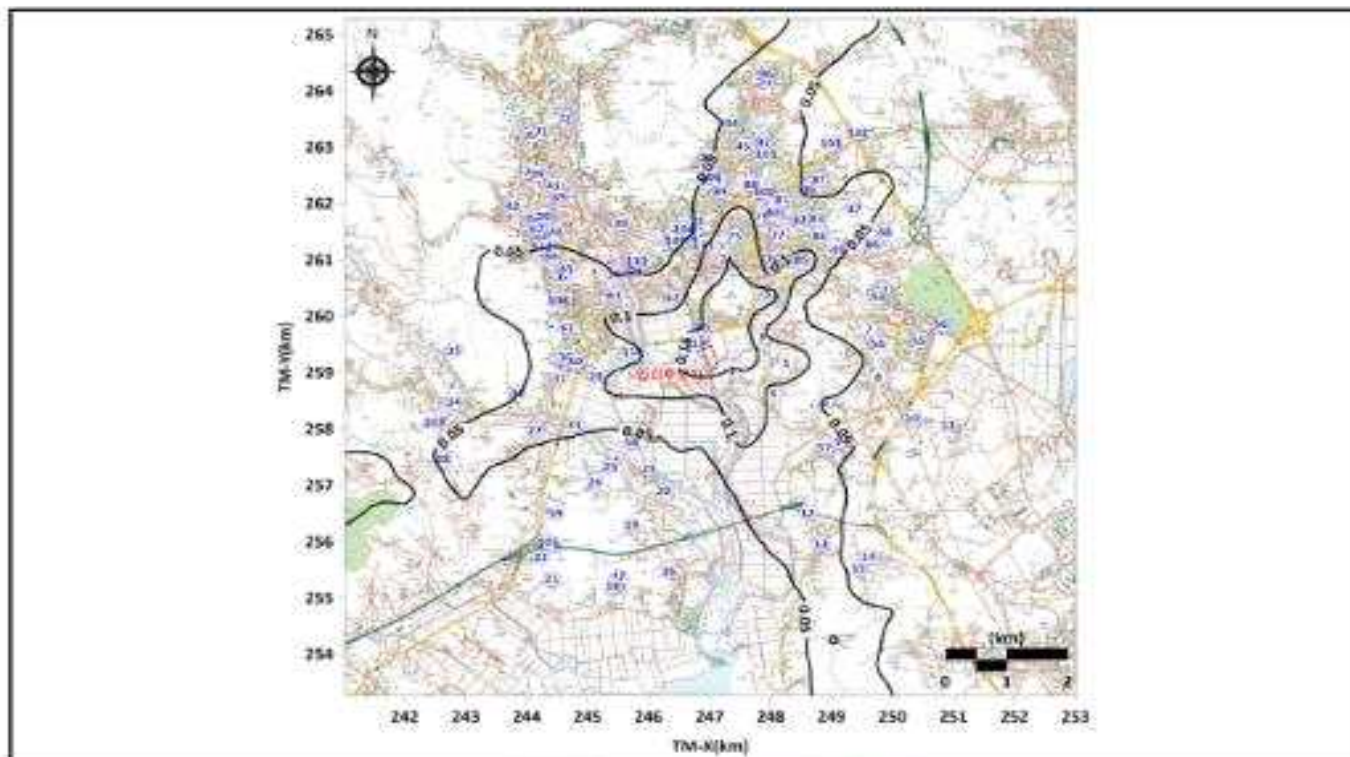
◎다이옥신(Dioxin)은 인류가 만든 화학물질 중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 물질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물질(Group 1,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

- 청산가리보다 약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녀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독극물' 또는 '죽음의 재'라고도 불립니다.
- 일단 인체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축적
- 발암성: 간암, 폐암, 임파선암, 혈액암 등을 유발하며 전신에 영향
- 분비계 교란: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생식 기형, 불임, 성 기능 저하
- 피부 및 면역 질환: 피부 질환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파괴
- 발달 장애: 임산부가 노출될 경우 태아에게 전달되어 기형아 출산이나 발달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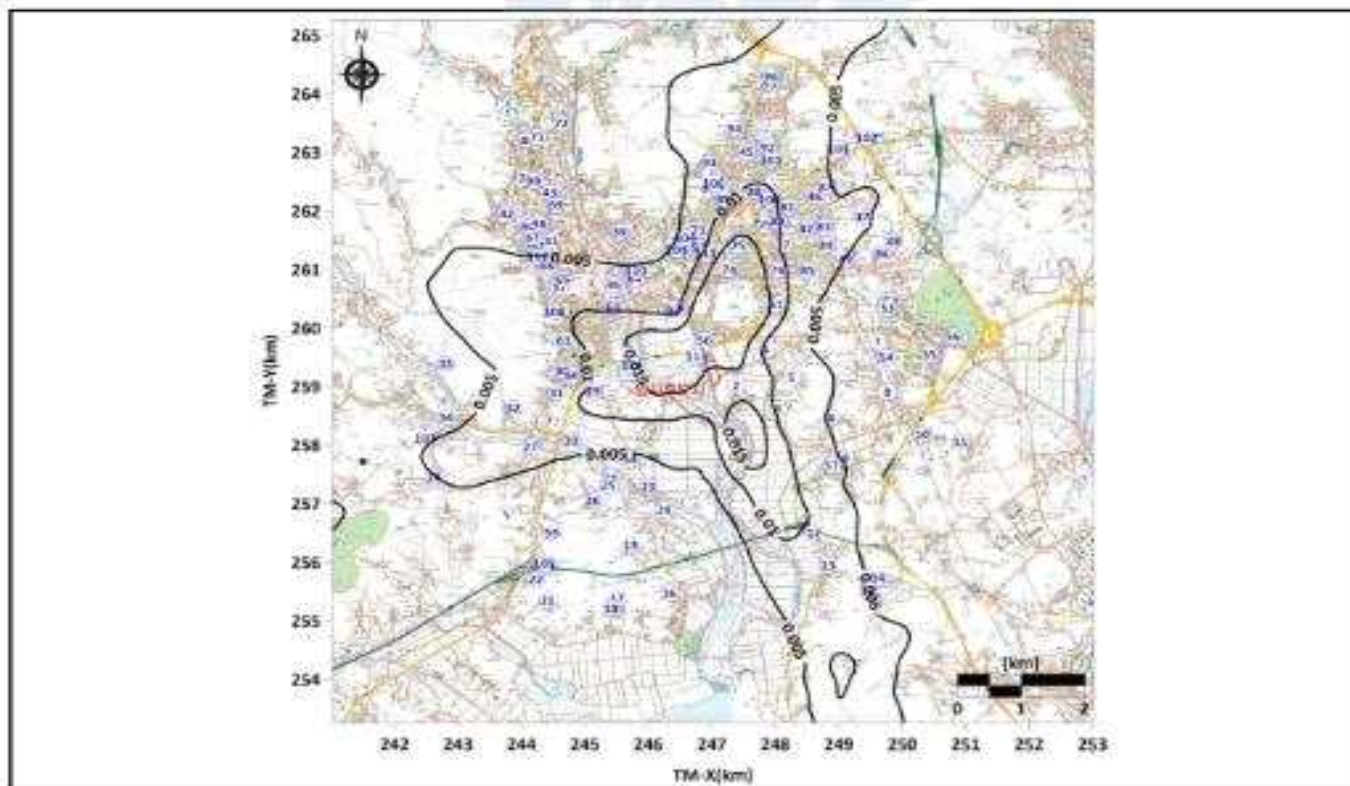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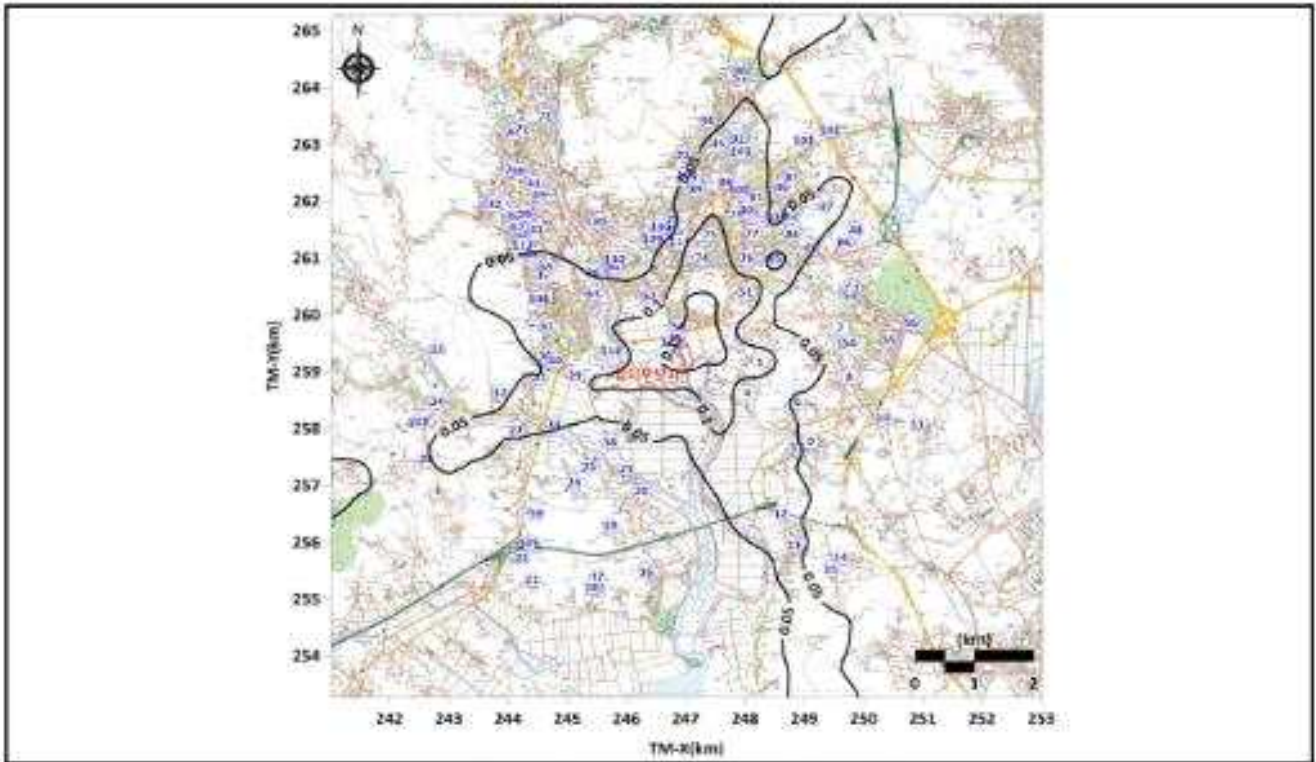
[대기공해오염도가 심각한 도시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오염도 폭증으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위반 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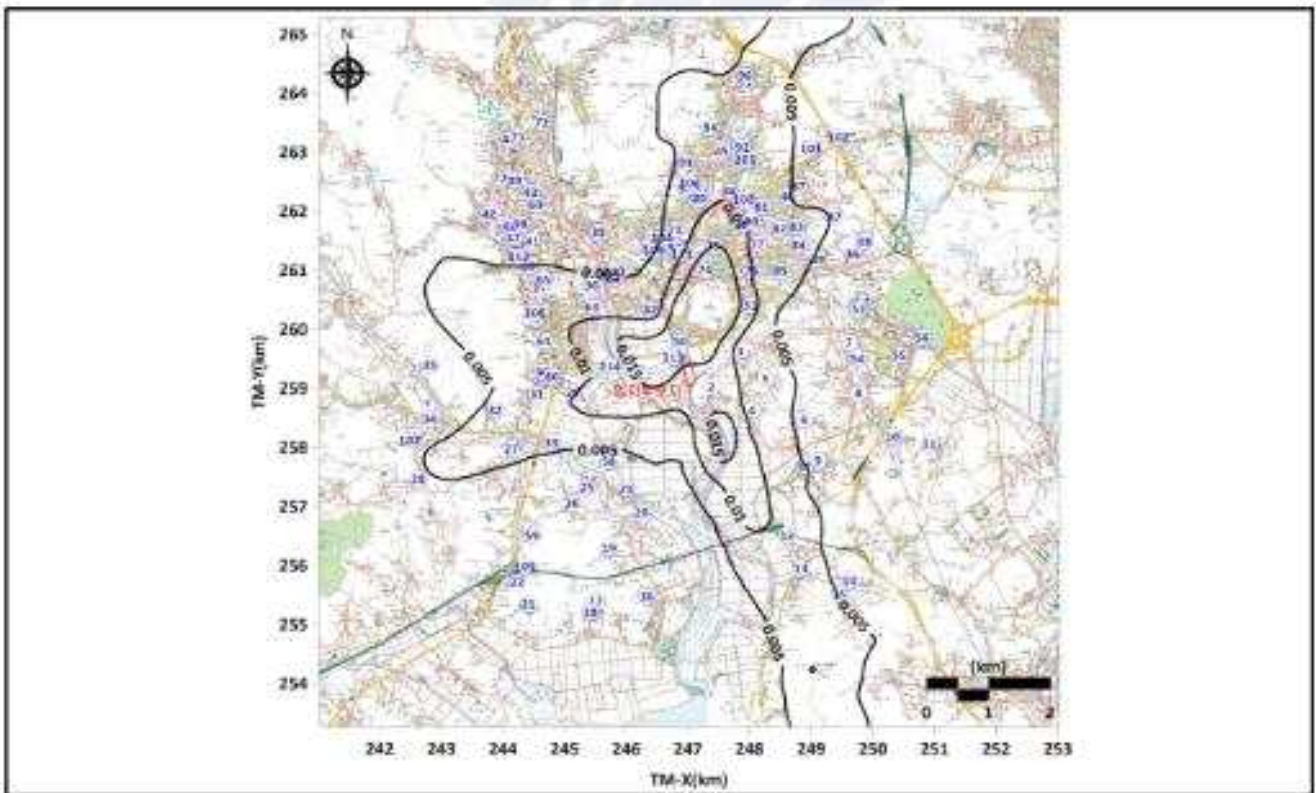
<그림 10.2.1-30> 운영시 24시간 평균 PM-10 등농도 곡선($\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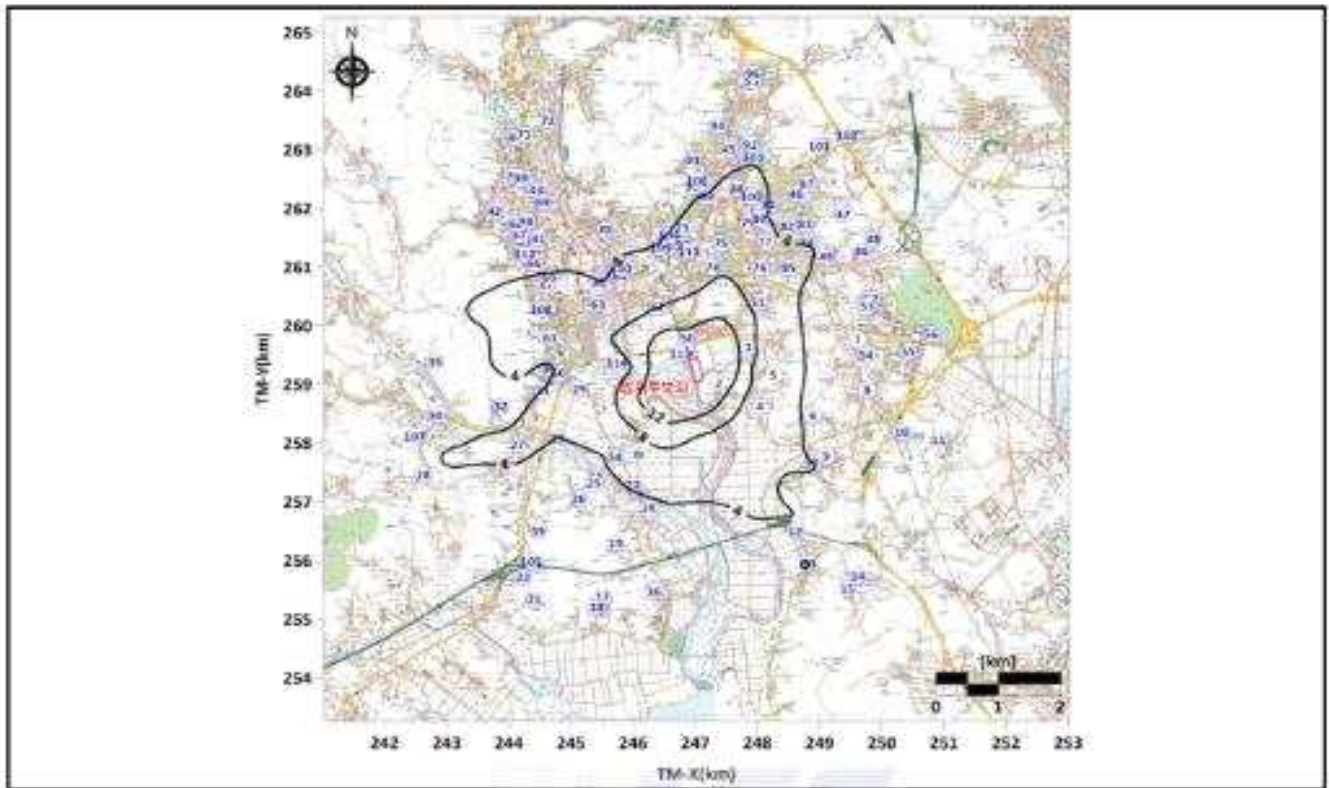
<그림 10.2.1-31> 운영시 연 평균 PM-10 등농도 곡선($\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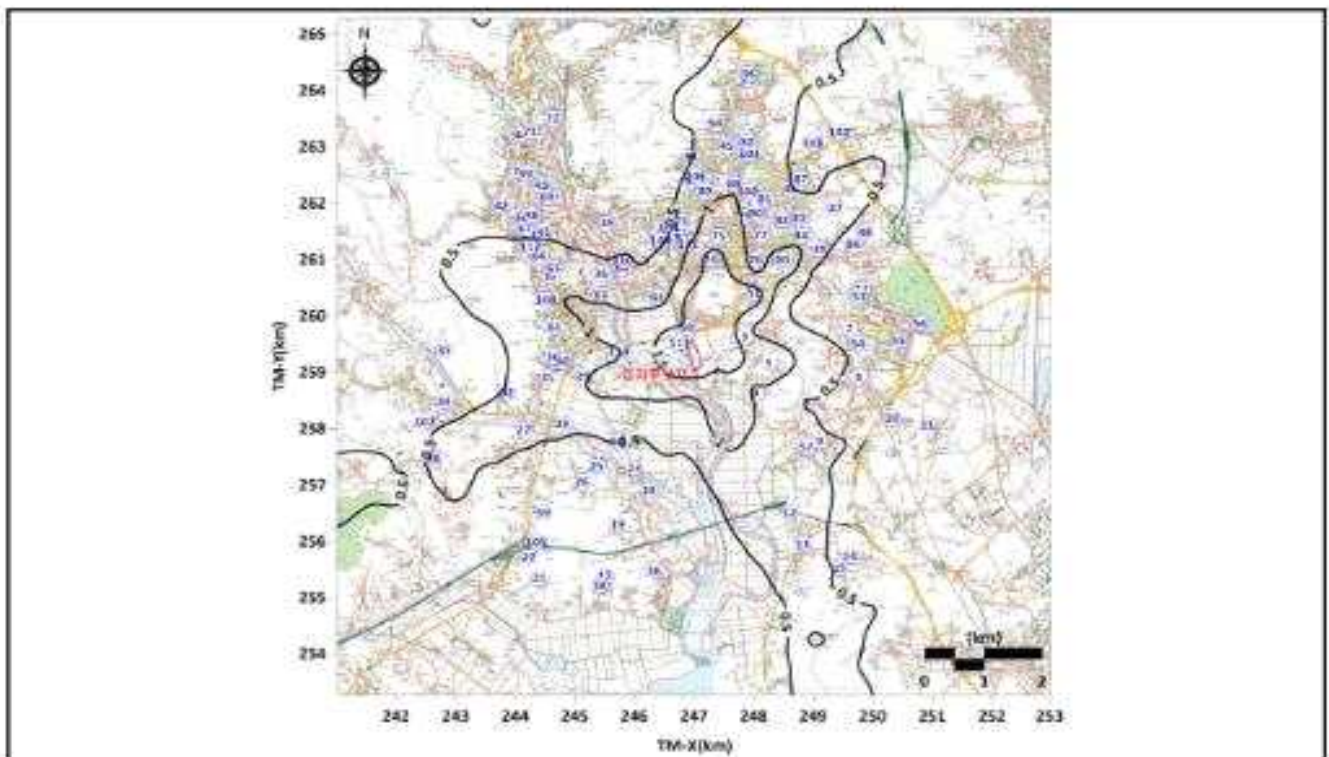
<그림 10.2.1-32> 운영시 24시간 평균 PM-2.5 등농도 곡선($\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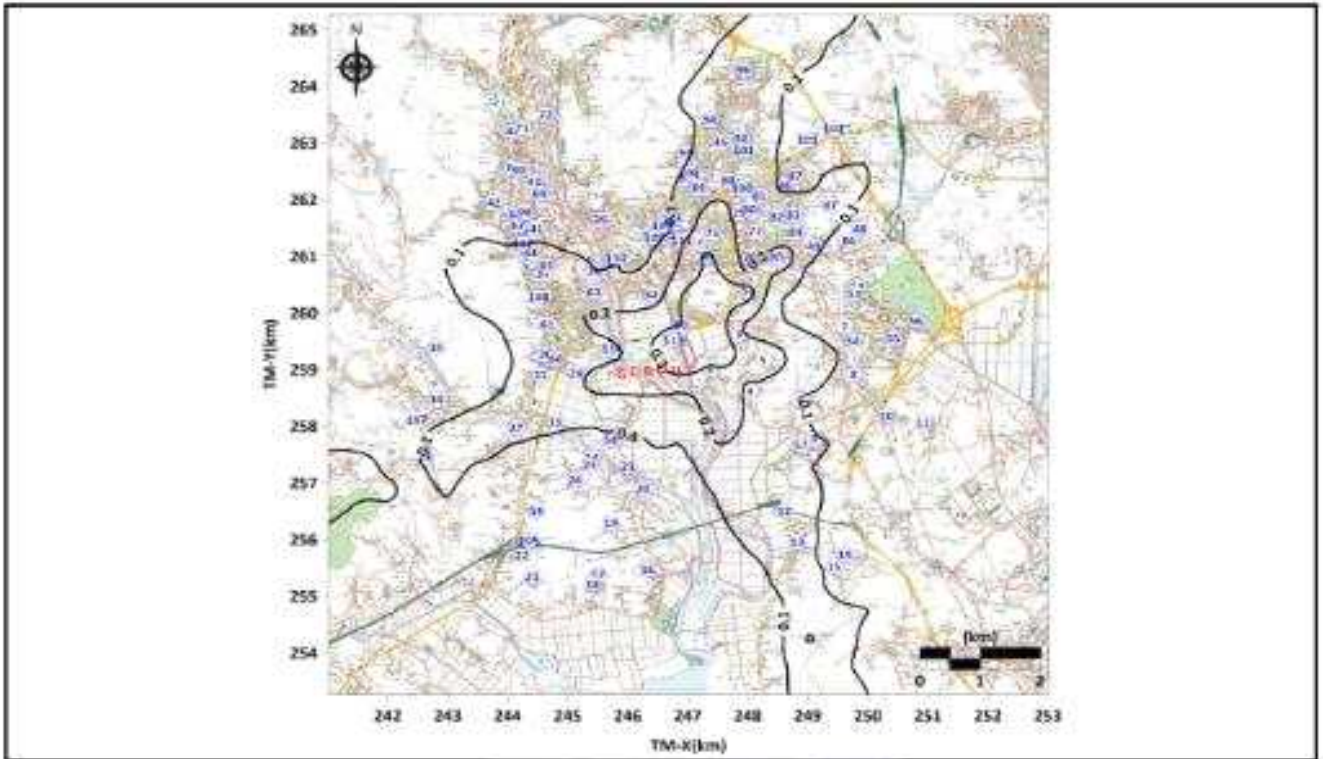
<그림 10.2.1-33> 운영시 연 평균 PM-2.5 등농도 곡선($\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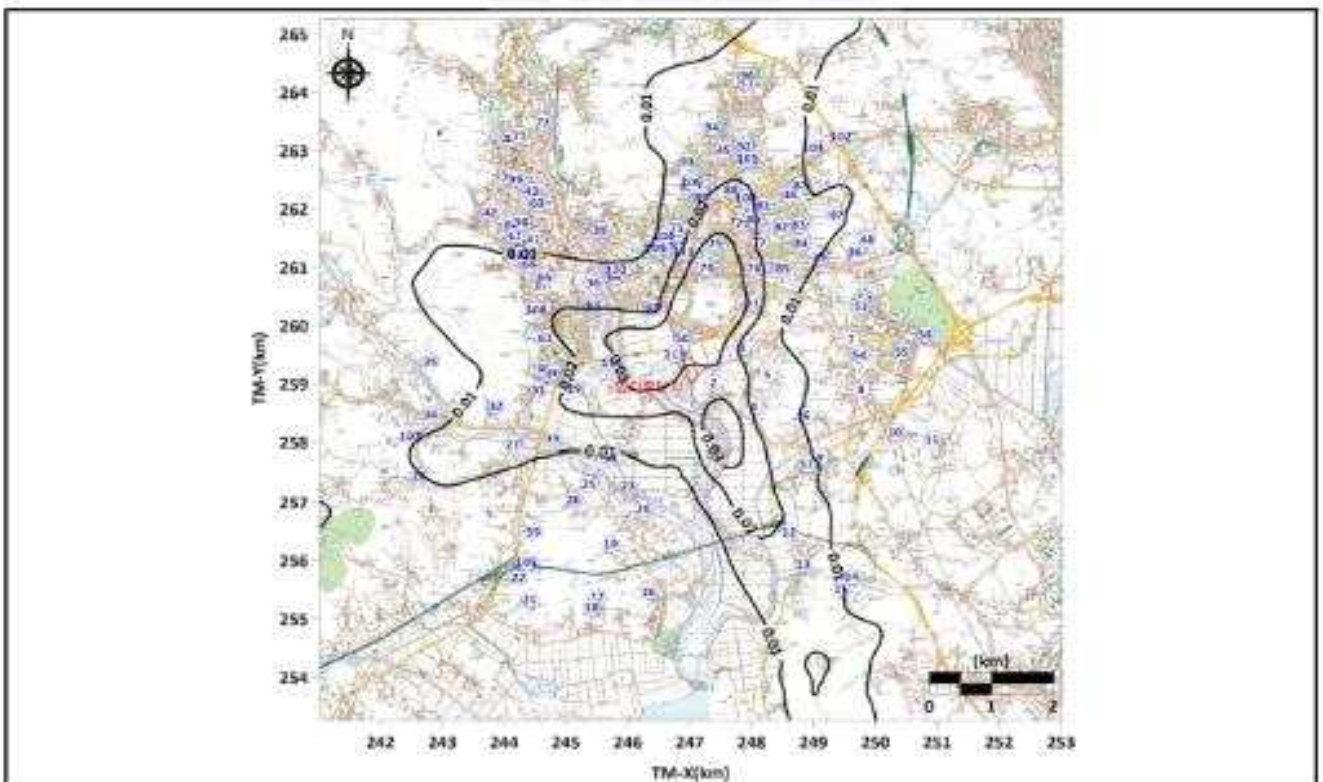
<그림 10.2.1-34> 운영시 1시간 평균 NO₂ 등농도 곡선(p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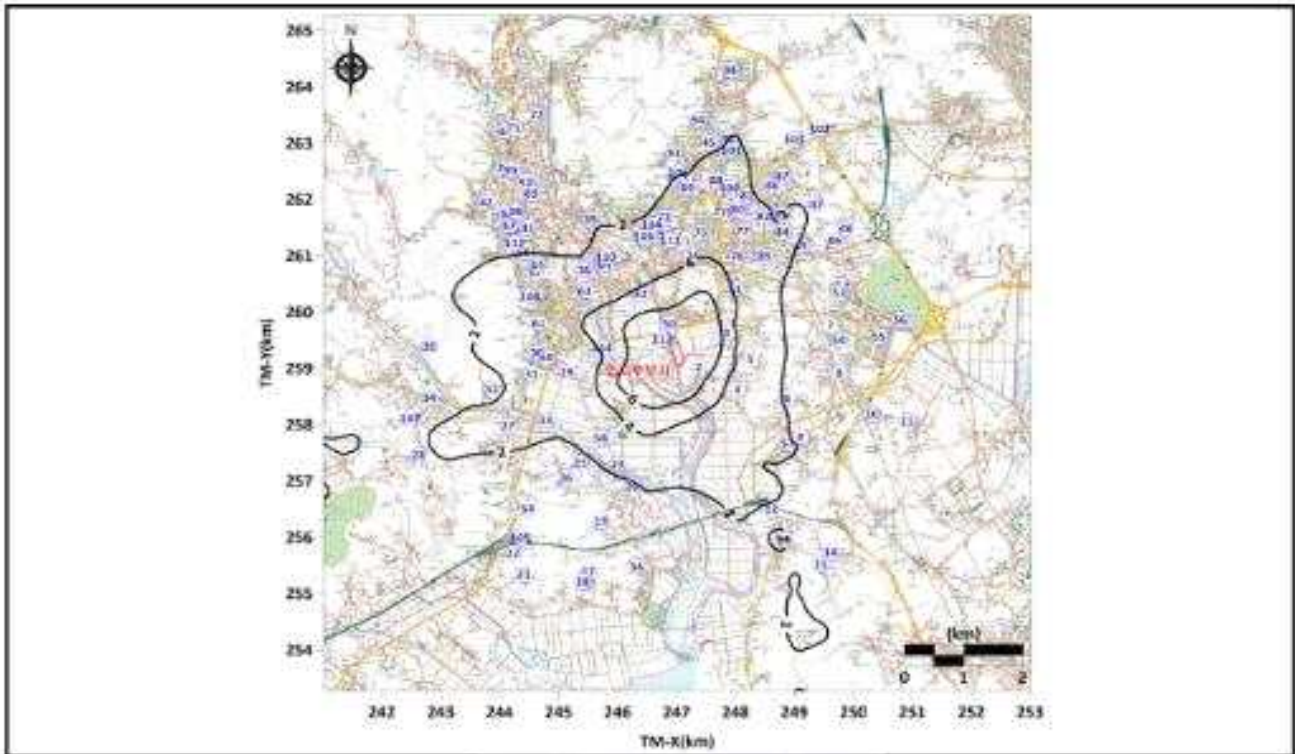
<그림 10.2.1-35> 운영시 24시간 평균 NO₂ 등농도 곡선(p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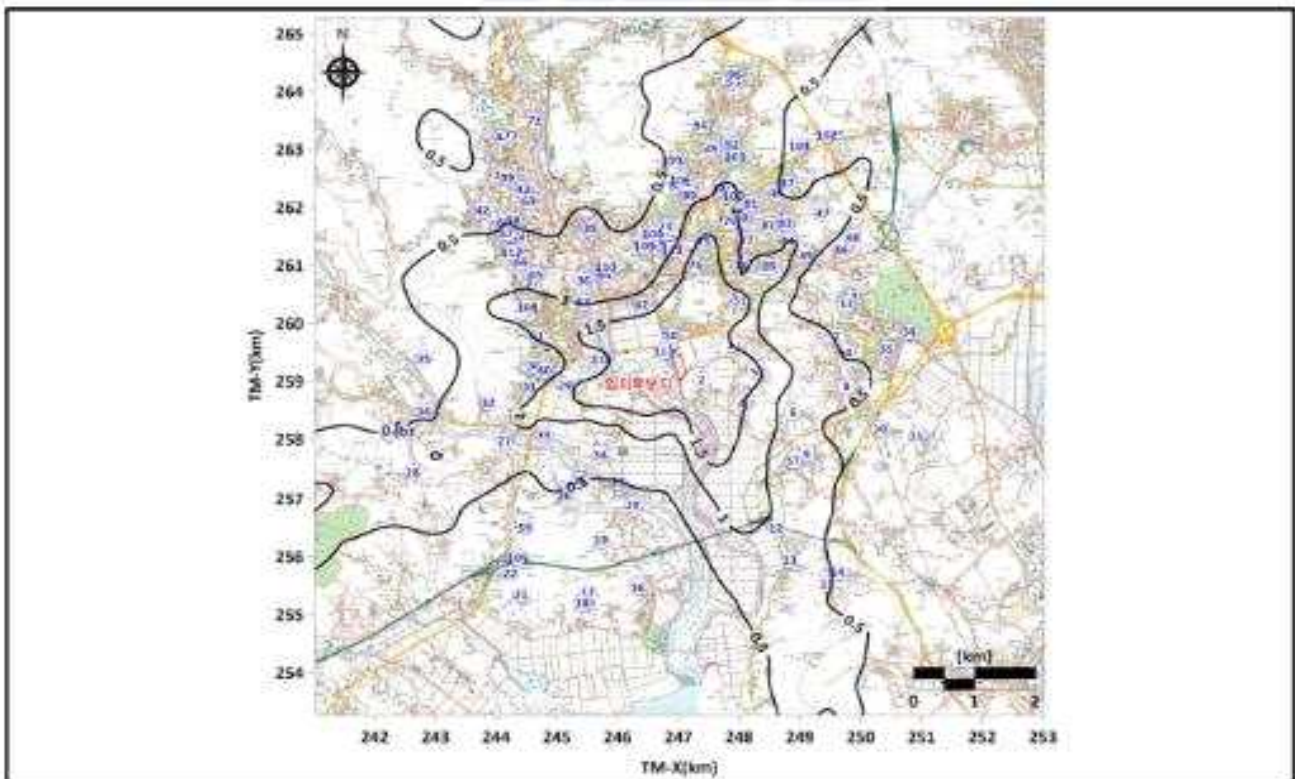
<그림 10.2.1-38> 운영시 24시간 평균 SO₂ 등농도 곡선(p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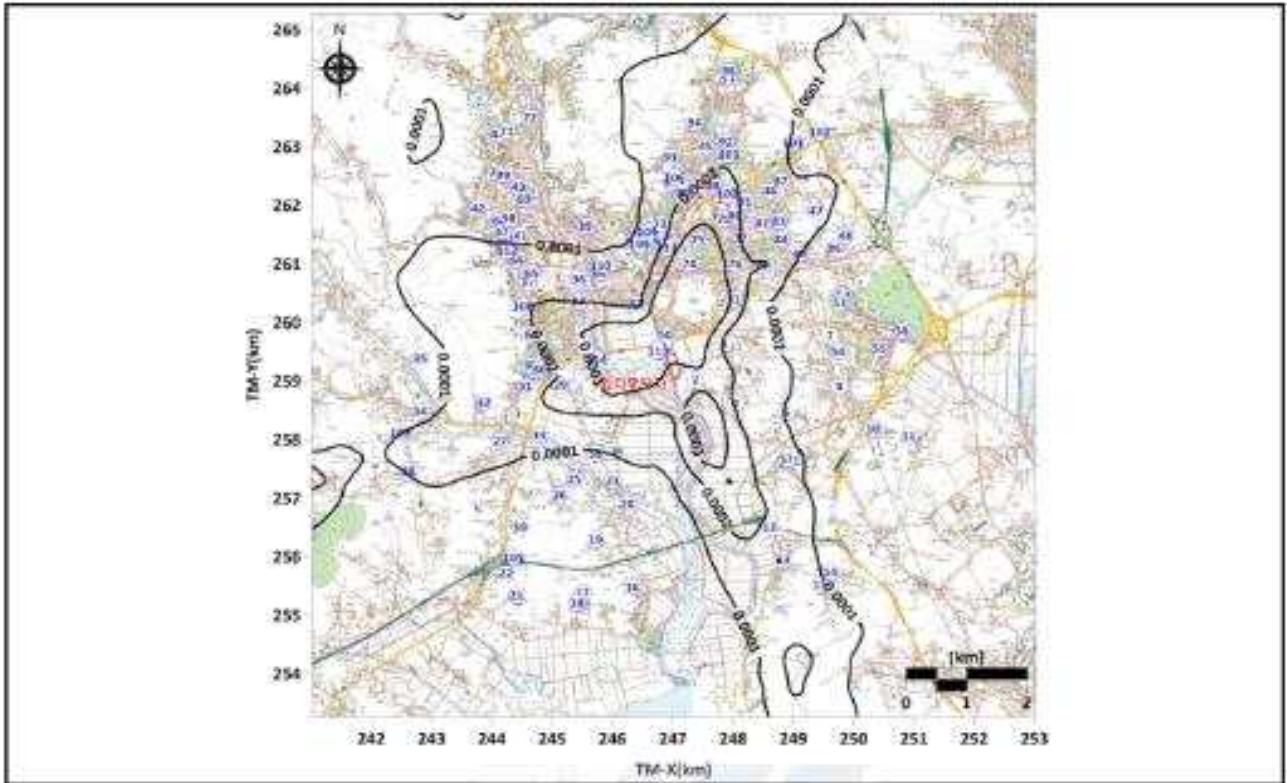
<그림 10.2.1-39> 운영시 연 평균 SO₂ 등농도 곡선(p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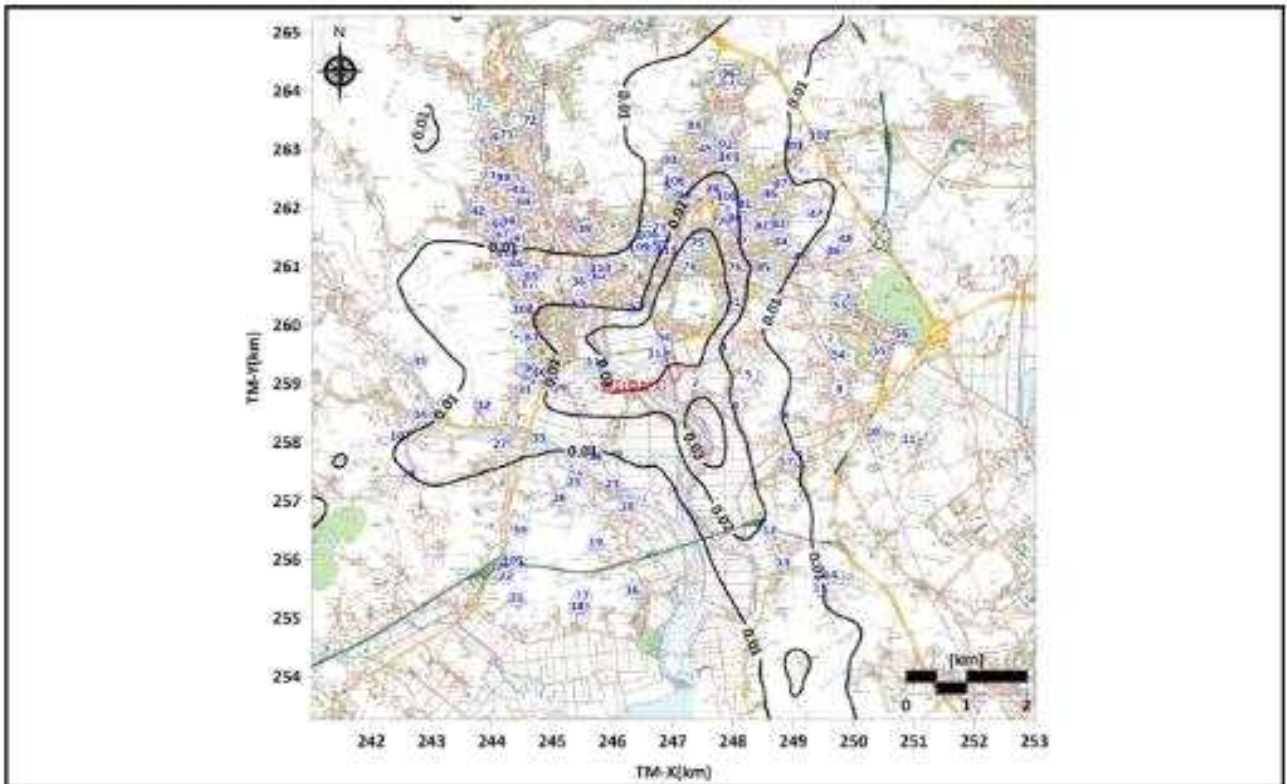
<그림 10.2.1-40> 운영시 1시간 평균 CO 등농도 곡선(ppb)



<그림 10.2.1-41> 운영시 8시간 평균 CO 등농도 곡선(p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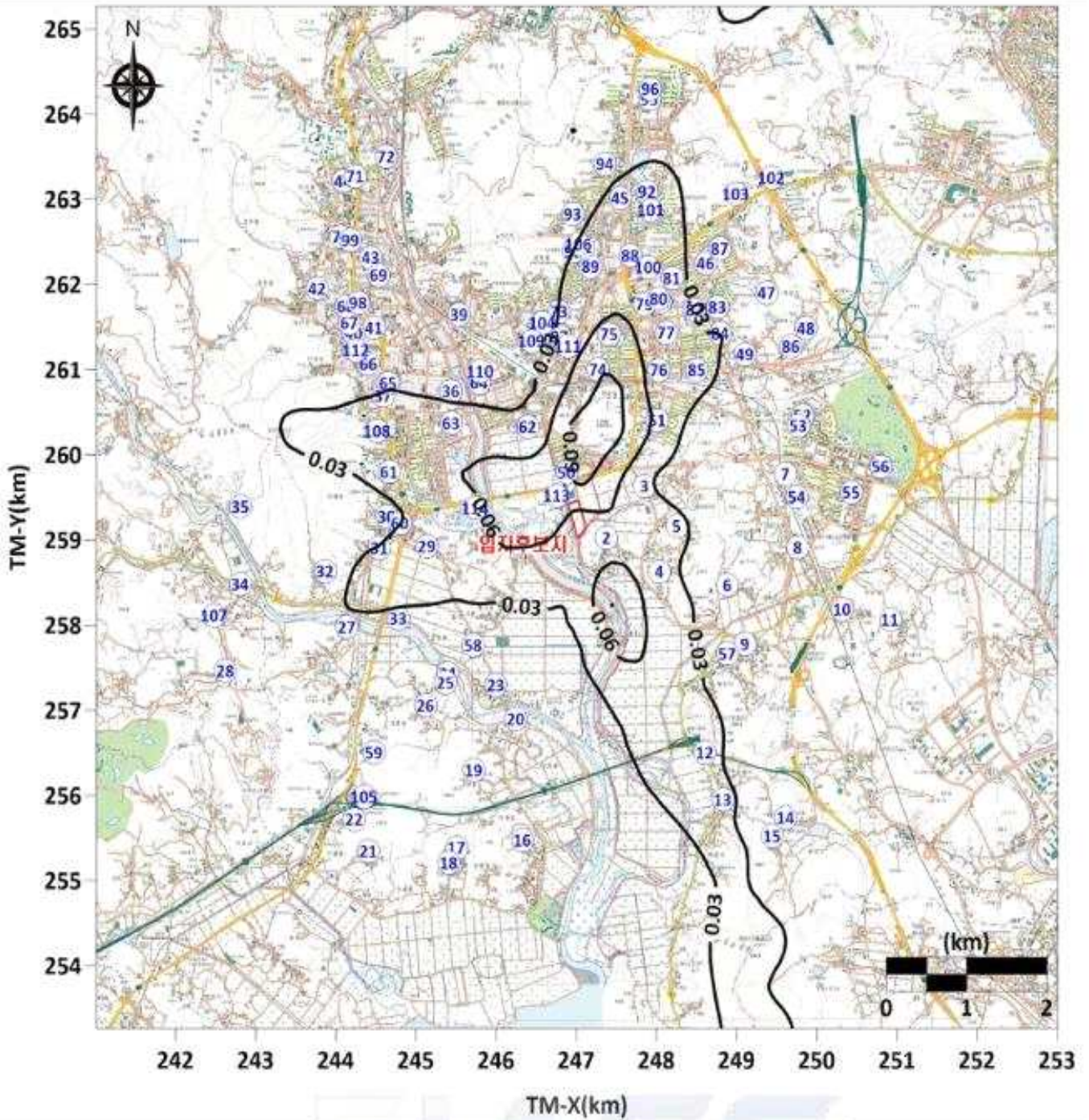


<그림 10.2.1-42> 운영시 연 평균 Pb 등농도 곡선($\mu\text{g}/\text{m}^3$)



<그림 10.2.1-43> 운영시 연 평균 벤젠 등농도 곡선($\mu\text{g}/\text{m}^3$)

하루 이틀, 한달 두달, 1년 2년.....10여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 운영시 연 평균 다이옥신 등농도 곡선 (pg-TEQ/m³)

17.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식물 보존)을 위하여 다른 적 합 입지가 넓고 많은데 위험성을 알면서 예정된 사전 입지로 확정 하기 위하여 위법 추진하였다.

○ 조사 결론: 입지 후보지(연향 814-25)에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면
법종 보호종의 다양한 생물 동물의 피해로 멸종 또는 개체수 감소 우려

나. 자연환경자산

1) 현 황

가) 조사항목

- 법정보호지역, 법정보호종,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나) 조사범위

- 본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조사항목의 영향권을 조사범위로 설정

<표 10.1.1-65> 자연환경자산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	○ 입지후보지 경계로부터 500m
시간적 범위	○ 조사대상지 일원의 5년 이내 자료 기준 ○ 문헌자료를 활용 필요 판단되는 경우 공신력 있는 학술조사·연구보고서에 한하여 추가

다) 조사방법

- 문헌자료 기준(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등)
- 법정보호종 자료는 현지조사, 탐문조사 실시

라) 조사결과

<표 10.1.1-66> 자연환경자산 조사항목 및 지정의 배경

구분	조 사 항 목	자연환경자산 지정의 배경	분포 현황	이격 거리 (km)	
법정보호 지역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	-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구변관리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	●	1.0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	16.00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
		시·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3.10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4.60
	환경부 외 지정	특정도서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	●	22.05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3.95
	국제기구 국제협약	국제협약 지정 등록 또는 추진중인 지역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국제협약 가입	●	1.00
		유네스코보호지역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 - ●	4.60 - 포함
법정보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접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제 25조	●	인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	16.70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	포함	

<표 5.1.3-14>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역 현황

조사지역		주요종	
순천시	주압호	멸종위기 II급	독수리, 새매
		천연기념물	원앙, 독수리, 새매
	여자만	멸종위기 I급	저어새
		멸종위기 II급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매, 물수리, 독수리, 잣빛개구리매, 새매,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천연기념물	큰고니, 원앙,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매, 독수리, 잣빛개구리매, 새매,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순천시	순천만	멸종위기 I급	저어새, 흰꼬리수리
		멸종위기 II급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매, 물수리, 독수리, 잣빛개구리매, 참매,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잣빛개구리매, 참매,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수리부엉이, 쇠부엉이

자료) 2021-2022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2022, 국립생물자원관

10.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표 10.1.1-79> 자연환경자산 지정 현황

구분	조사항목	자연환경자산 지정의 배경	분포현황	이격거리 (km)	
법정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주변관리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	●	1.0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	16.00
		시·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3.10
	환경부 외 지정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4.6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	●	22.05
	국제기구 국제협약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3.95
		국제협약 지정 등록 또는 추진중인 지역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국제협약 가입	●	1.00
법정보호종	유네스코보호지역	세계문화유산 생물권보전지역	●	4.60 포함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제 25조	●	인접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천연기념물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	16.70 포함	

나) 법정보호종과의 연관성

- 「동·식물상」 편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예측 참고

<표 10.1.1-28> 조사지역의 육상동물상 집계표

구분 분류군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문헌조사(과/종)										
	출현종수	주요종	3	4	5	6	7	8	9	10	11	12	13
포유류	4과 4종	수달	-	5/8	7/10	6/7	2/2	6/6	6/8	7/10	2/2	7/10	-
양서류	2과 3종	참개구리	-	4/7	5/7	1/1	2/3	3/3	2/4	4/6	미확인	3/4	-
파충류	1과 1종	누룩뱀	-	2/2	2/3	1/2	미확인	1/2	1/2	3/4	2/2	2/3	-
조류	17과 25종	황조롱이	30/56	30/54	-	29/54	17/20	11/16	12/18	27/52	16/21	15/29	34/97
육상곤충류	43과 92종	알락하늘소	-	-	10/38	43/96	31/57	3/7	21/50	48/82	36/72	51/123	-

- 문헌3)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멸종위기야생생물 : 광양), 2017, 국립생태원
 문헌4)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순천), 2018, 국립생태원
 문헌5)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광양), 2018, 국립생태원
 문헌6)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0,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문헌7) 국가정원스포츠헤터~직업체험센터간 도로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19, 순천시
 문헌8) 정원자재종합유통전시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19, 순천시
 문헌9) 순천만 국가정원주차장 조성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19, 순천시
 문헌10)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20, 순천시
 문헌11) 해룡천 하천정비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20, 순천시
 문헌12)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 2013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2013년도 공사시 제3차년도 및 운영시 제1차년도 조사결과), 2014, 2013 국제정원박람회추진위원회
 문헌13) 2022-2023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순천만), 2022, 국립생물자원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3) 육수동물상

- 조사결과, 입지후보지 주변지역(이하, "조사지역")의 육수동물상은 <표 10.1.1-42>과 같이 정리함. 한편, 문헌조사는 조사지역과 근접하는 최근 조사자료를 선정, 조사함.

<표 10.1.1-42> 조사지역의 육수동물상 집계표

구분 분류군	현지조사		문헌조사									
	출현종수	우점종	1	2	6	7	8	9	10	11	12	
담수어류	Wa.1	4과 8종	갈겨니	8/18	10/24	2/9	2/4	2/2	3/4	6/13	2/6	5/13
	Wa.2	5과 9종										
	Wa.3	4과 6종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Wa.1	12과 12종	깔따구류	31/52	29/40	11/13	14/14	8/10	13/13	17/18	11/12	20/26
	Wa.2	13과 13종										
	Wa.3	15과 15종										

- 문헌1)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순천), 2010, 환경부
 문헌2)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광양), 2010, 환경부
 문헌6)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0,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문헌7) 국가정원스포츠헤터~직업체험센터간 도로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19, 순천시
 문헌8) 정원자재종합유통전시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19, 순천시
 문헌9) 순천만 국가정원주차장 조성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19, 순천시
 문헌10)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20, 순천시
 문헌11) 해룡천 하천정비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20, 순천시
 문헌12)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 2013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2013년도 공사시 제3차년도 및 운영시 제1차년도 조사결과), 2014, 2013 국제정원박람회추진위원회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 입지후보지가 위치한 순천시에는 총 3개소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가 지정되어 있음.
- 입지후보지는 "순천만"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 포함됨.

<표 10.1.1-78> 순천시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현황

조사지역		주요종	
순천시	주암호	멸종위기 II급	독수리, 새매
		천연기념물	원앙, 독수리, 새매
	여차만	멸종위기 I급	저어새
		멸종위기 II급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매, 물수리, 독수리, 젓빛개구리매, 새매,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천연기념물	큰고니, 원앙,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매, 독수리, 젓빛개구리매, 새매,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순천만	멸종위기 I급	저어새, 흰꼬리수리
		멸종위기 II급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매, 물수리, 독수리, 젓빛개구리매, 참매,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젓빛개구리매, 참매,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수리부엉이, 쇠부엉이

자료) 2021-2022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2022, 국립생물자원관

㉔ 생물권보전지역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전가치가 뛰어난 생태계 중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하면 우리나라 생물권보전지역은 9개(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 생태평화, 연천 임진강, 완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 입지후보지가 위치한 순천시 전역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표 10.1.1-75> 순천시의 생물권보전지역 현황

위치	면적(ha)	지정내역(ha)				비고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육상	해양	육상	육상	
순천시 전역	93,840	6,568	2,800	12,041	72,431	-

자료)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http://unescomab.pms.or.kr/v2/main.html>)

(2) 법정보호종

(가) 현지조사

-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물고사리(멸종위기 II급), 수달(멸종위기 I급, 천연기념물 제330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등 3종이었음.

러. 국가정원 현황

-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식물, 토석, 물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원 정원 2개소, 지방정원 7개소가 조성·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입지후보지가 위치한 순천시에는 1개소의 국가정원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입부터 약 40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1.3-19> 국가정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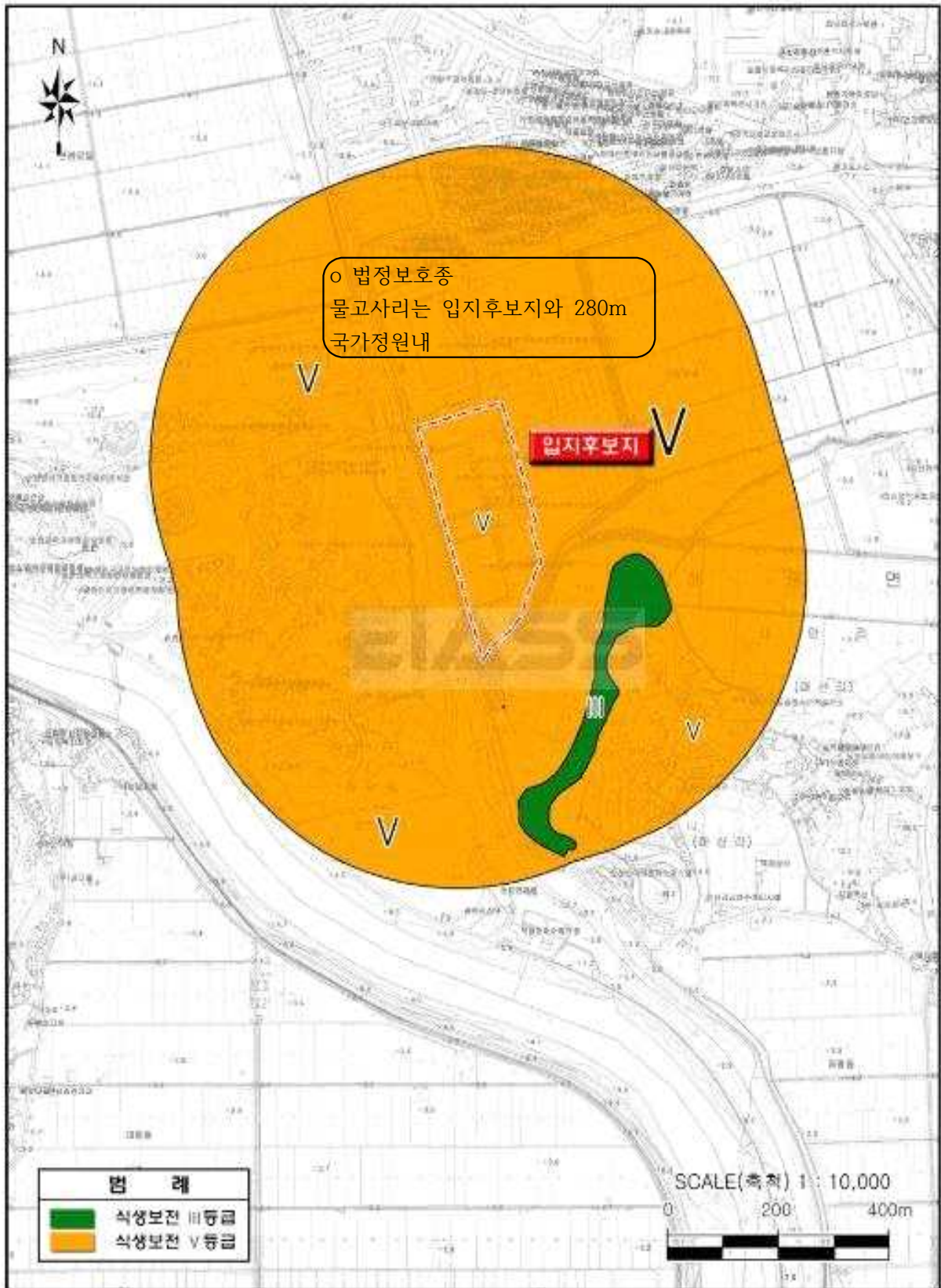
명칭	위치	정원면적(㎡)	녹지면적(㎡)	비고
순천만 국가정원	전남 순천시국가정원 1호길47	926,992	377,000	21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835,452	630,504	20

자료) 산림청(<https://www.forest.go.kr>)

5.1.4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가. 생태자연도

-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를 검색 및 조사하였으며, 생태·자연도는 4년 참고 자료용이므로 생태·자연도 등급별 분포구역과 식생면적분포는 다소 상이함
- 입지후보지의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분포는 3등급 100.00%로 조사되었음



<그림 10.1.1-9> 입지후보지의 식생보전등급도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	500m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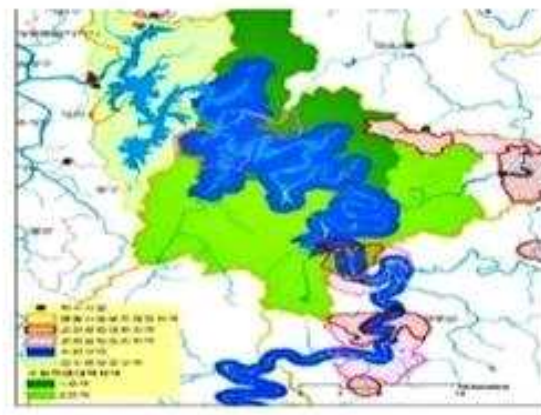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8. 순천시 해룡천의 6개 특징과 오염도 심각성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위법하다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 장소에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을 추진하였다.

해룡천은 조례동·연향동·덕암동 일대의 우수·오폐수가 유입되는 천으로 오염도가 심하여 동천의 물을 펌핑으로 유입시켜 희석하여도 정화되지 않아 지역주민은 계속하여 오염 악취등으로 아우성이다. 이곳에 하루 5ton트럭× 52대(260ton)를 소각 처리하며 흐르는 물질이 천으로 유입하며는 해룡천은 오염도 폭증하니 이곳에 폐기물소각 처리장 설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 순천시 해룡천 6개 특징
1. 전라남도 지방하천 구역
 2. 철새 센서스지역(철새보호)
 3. 습지기초지도 지역
 4. 유네스코생물권보존지역 (핵심·완충지역)
 5. 생태자연도1등급지역에서 250m (700m 이내)
 6. 토지이용규제지역 (자연 녹지 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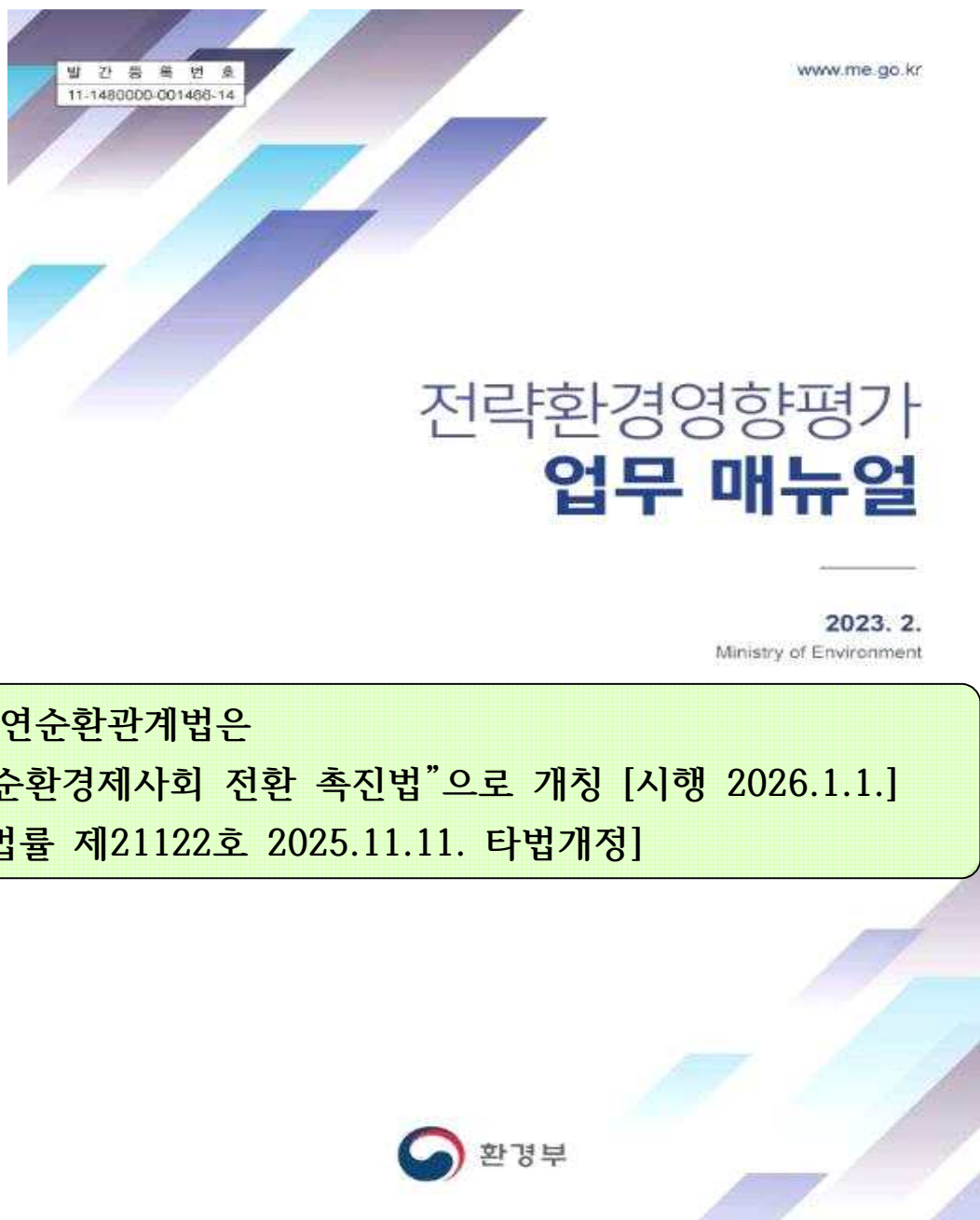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해룡천은 동천의 맑은 물을 3대의 대형 펌프로 3 계절 24시간 펌핑 800m송수하여도 악취가 진동하므로 이곳에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은 공해 물질 누적적 영향이 엄청큼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漲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2km 이내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5km 이내인 지역
 - 공장 또는 산업단지 이외의 시설인 경우 :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침수구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100m 이내인 침수구역
 - 다만,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홍수관리구역은 제외

19. 자원순환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아 전략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절차상 위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5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책자의 7개 페이지(155p ~ 161p)에 걸쳐서 자원순환계획의 근거와 자원순환 기본계획, 시행계획, 절차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8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 자원순환기본계획

2. 자원순환시행계획

가. 근거 및 용어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